

**「조수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4.**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조수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조수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조수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조수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 목 차 -

## I. 일반사항

1. 목 적 .....	3
2. 적용 범위 .....	3
3. 관련 법규 .....	4
4. 용어 정의 .....	5

## II.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	8
2. 전개 양상 .....	8
3. 위기관리 체계 .....	9
가.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	9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10
다. 위기관리기구 체계 .....	12
라. 우리 기관의 대응체계 .....	19
4.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21
가. 대응개념 .....	21
나. 대응지침 .....	21
다. 판단·고려요소 .....	21
5. 위기경보 .....	22
가. 위기경보 수준 .....	22
나. 위기경보 절차 .....	23

## III.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관심 .....	29
가. 상황 .....	29
나. 조치사항 .....	29

다.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	29
2. 주의 .....	36
가. 상황 .....	36
나. 조치사항 .....	36
다.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	29
3. 경계 .....	43
가. 상황 .....	43
나. 조치사항 .....	43
다.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	48
4. 심각 .....	49
가. 상황 .....	49
나. 조치사항 .....	49
다.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	54

#### **I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조수재난에 따른 유류 오염 .....	58
가. 상황 .....	58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59
다.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	63

#### **V. 기관대응수칙**

I.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67
II. 조수 재난 대응 프로세스 .....	68
III. 조수 재난 주요 협업기능 .....	69
IV. 조수 재난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	70
V. 비상연락망 .....	71

## VI. 부록

1. 최근 10년간 조수 피해 사례 .....	75
2.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	77
3. 영상회의 시스템 .....	84
4.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 .....	86
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전달 체계 .....	110
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112
7. 국민행동요령(안전취약계층 포함) .....	116
8.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관측소별 고조정보(4단계) .....	132
9. 국립해양조사원 이안류 정보(4단계) .....	133

## 【제 · 개정 이력】

일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자	협의기관
'15. 9	조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제정에 따라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안) 마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물류 기획실 송찬욱	
'17. 8	조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제정에 따라 위기대응 행동 매뉴얼(안) 마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항만 운영팀 조혜정	
'18. 4	조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라 긴급대응반 현장파견관 명시	정부 조직도 현행화 해양수산부 재난초기 대응·운영 방침	항만 운영팀 정하수	
'19. 10	새정부 출범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 반영 및 사고수습기구 구성·운영 명료화 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536('19.02.20.))	조수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변경	안전 보안실 박정철 황수범	
'20. 05	비상연락망 및 외부 기관명칭 현행화	매뉴얼 자체점검 실시	안전 보안실 박정철 황수범 장영진	
2020.1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매뉴얼 정기점검	안전 보안실 황수범 장영진	
202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매뉴얼 정기점검	안전 보안실 황수범 장영진	
2022.4.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의 부서별 임무 및 역할 개선, 실무·행동매뉴얼 작성 대상기관 조정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변경, 매뉴얼 정기점검	재난 안전실 나승주	





# I . 일반사항



# I . 일반사항

## 1 목 적

이 매뉴얼의 목적은 조수재난에 대해 위기경보 수준별 해양수산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세부 대응절차, 조치사항 및 유관 부처·기관의 협조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음

“조수재난”이란 연안이나 하구에서 고조(高潮), 너울(이상고파) 및 기상해일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이상 상승하거나, 이안류가 발생하여 유발하는 피해

- ※ “고조”란 밀물이 들어와 해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상태
- ※ “너울”이란 큰 풍랑이 발생역인 저기압이나 태풍의 중심 부근을 떠나서 잔잔한 해면이나 해안에 온 경우 또는 바람이 갑자기 그친 후의 남은 파도 등이 이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너울성파랑 이라고도 칭함
- ※ “이안류”란 일정하지 않게 해안으로 전파되는 파랑 에너지에 의해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이동하는 폭이 좁은 해수의 흐름
- ※ “기상해일”이란 봄철에 빠른 속도(80km/h)로 이동하는 저기압에 의해 발생한 해상의 파동이 서해를 지나오면서 서해 연안의 갯바위나 방파제에 돌발적으로 증폭되는 현상

## 2 적용 범위

가. 조수재난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관련기관의 활동에 적용  
나. 조수로 인하여 연안·하구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가 대규모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에 적용

- 1) 고조(백중사리 전후), 너울(이상고파) 및 기상해일 등 해수면의 이상 상승에 의한 저지대 농경지·주거지 침수피해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이안류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 조수재난(고조, 너울)이 연안과 하구에서 태풍 또는 해일 등과 겹쳐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상해일이 발생할 시에는 풍수해(태풍)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에 따름

### **3** 관련 법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388호), 조수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 「기상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라. 「하천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연안관리법」

마. 관련 규정, 지침 등

- 1) 민방위정보발령·전달규정(15개 기관 공동예규)
- 2) 기상예보업무규정 및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훈령)
- 3) 해양관측자료관리규정 및 해양관측업무규정(국립해양조사원예규)
- 4) 해양예보업무규정(국립해양조사원예규)
- 5)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 6)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70호)
- 7)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 8)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 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행정안전부)

## 4 용어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비상상황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
결과수습형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진행형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증폭형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수준이었으나, 대응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중대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유형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단체

구 분	내 용
위기경보 수준	<p>① <b>관심(Blue)</b>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상태 * 징후 감시활동, 비상연락망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p> <p>② <b>주의(Yellow)</b> :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가동</p> <p>③ <b>경계(Orange)</b> : 징후활동이 활발하고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조치계획 점검 및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 동원 준비</p> <p>④ <b>심각(Red)</b> :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 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하여 국가 위기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최대 투입, 위기발생에 즉각적 대응태세 유지</p>
재난관리 단계	<p>① <b>예방</b> :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p> <p>② <b>대비</b> : 재난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p> <p>③ <b>대응</b> : 재난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p> <p>④ <b>복구</b>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 <b>수습</b> :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p>
조수재난	연안이나 하구에서 고조, 너울 및 기상해일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이상 상승하거나, 이안류가 발생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고조정보 (4단계)	해수면 상승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각 조위관측소별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 고조 정보 참조
이안류 정보 (4단계)	이안류 발생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각 해수욕장별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 이안류 정보 참조
너울정보	기상청은 단기에보 통보문(날씨종합) 및 기상정보문을 통하여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너울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기상청 누리집과 해양기상정보 포털을 통해 제공
기상해일 정보	기상청은 기상해일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3~5월) 기상해일 감시단을 운영하여 기상해일 발생가능성 정보를 생산하며 기상해일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시간 정보를 생산 제공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1 위기 형태

형태	내용	비고
조수에 의한 연안 및 하구에서의 침수·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구, 선착장, 물양장 등 침수, 범람</li> <li>○ 수산양식시설(생물) 및 어망·어구 등 피해</li> <li>○ 어항, 항만 공사현장 피해 및 매몰 등 기능약화</li> <li>○ 선박의 침몰, 파손 및 기름유출 등에 의한 피해</li> <li>○ 항만 적재화물 피해, 해상교통 두절</li> <li>○ 갯바위, 방파제, 해수욕장 등에서의 월파 및 이안류에 의한 피해</li> <li>○ 주거지 침수 피해</li> <li>○ 해안도로 침수, 범람</li> <li>○ 산업단지 등 침수, 범람</li> <li>○ 벼 등 농작물 침수 및 염해 피해</li> <li>○ 농경지 유실·매몰,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침수 및 파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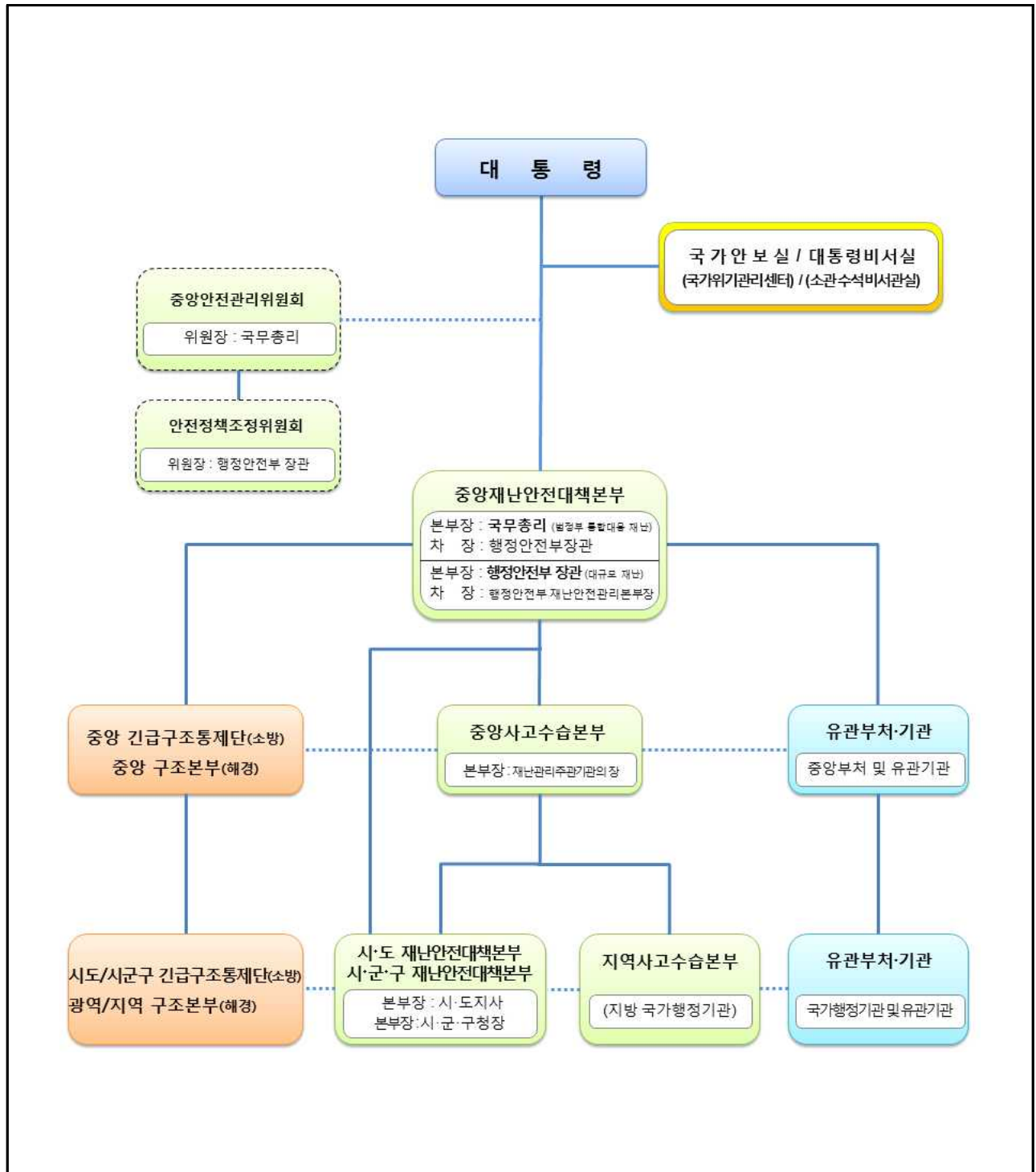
### 2 전개 양상

가. 백중사리 전후 등 조석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시기, 저기압의 이동·통과시 고조, **너울** 및 기상해일 등과 같은 해수면 이상 상승으로 연안 및 하구에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나. 이안류는 연중 발생하나 해수욕객이 증가하는 하계 입욕철에 자주 피해를 주고 있음

### 3 위기관리 체계

#### 가.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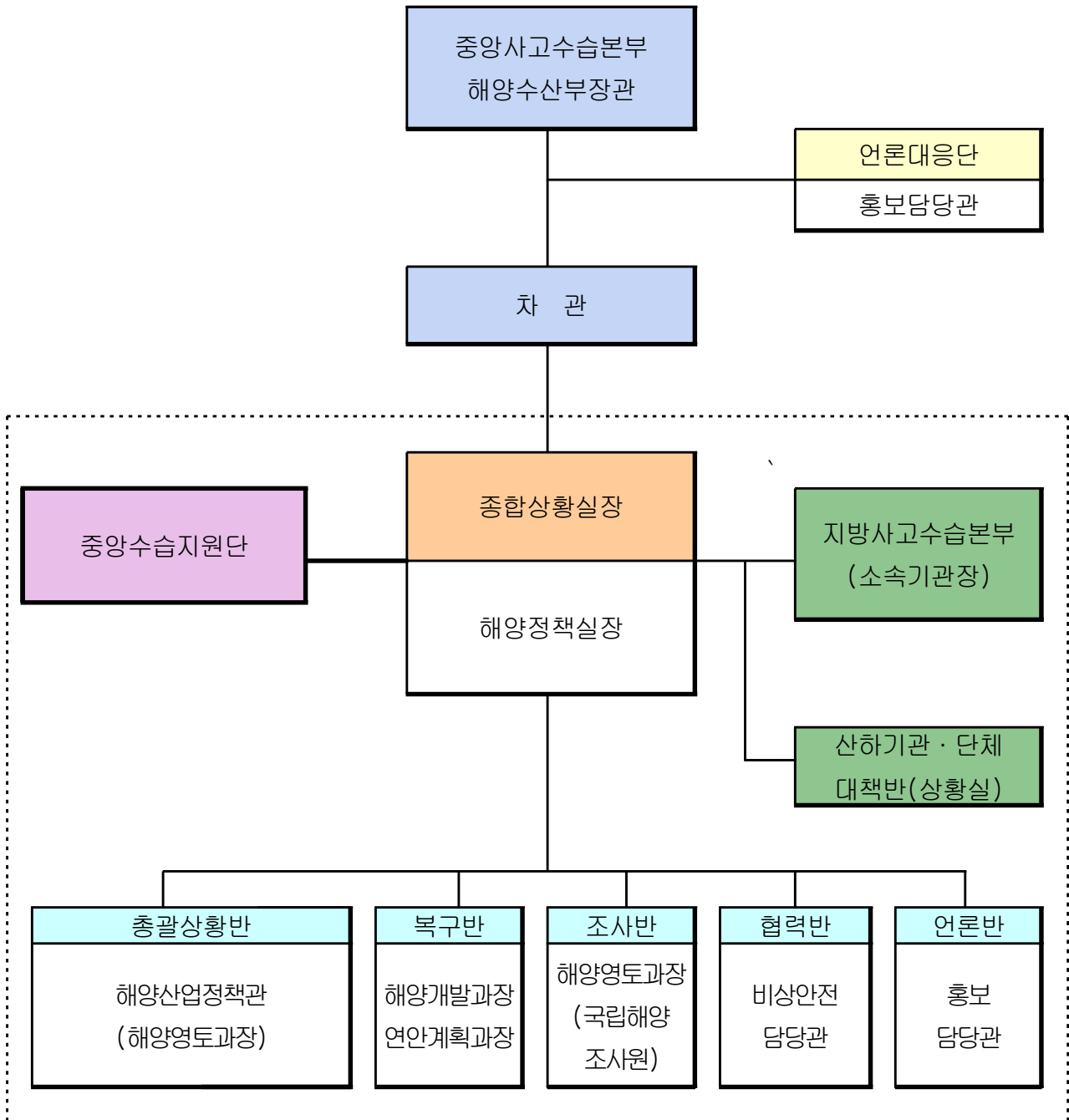
##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b>국가안보실</b> (국가위기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li> <li>•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b>대통령비서실</b> (소관비서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li> <li>•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li> </ul>
<b>중앙안전관리위원회</b> (국무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li> <li>•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li> </ul>
<b>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b>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li> <li>•재난 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li> <li>•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li> <li>•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li> <li>•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 권고할 수 있음</li> </ul> </li> <li>•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li> </ul>
<b>중앙수습지원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 권고 또는 조언</li> <li>•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 재정적 조치사항 및 진행사항 등에 관한 보고</li> </ul>
<b>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b> (지방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재난수습체계 구축</li> <li>•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시·군·구 단체장)</li> <li>•지역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li> <li>•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li> </ul>

구 분	임무와 역할
<p><b>중앙사고수습본부</b> (해양수산부 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 조치 및 재난수습</li> <li>- 재난·위기상황을 안전문자 등을 통해 전파</li> <li>•재난수습 총괄조정 및 언론 대응</li> <li>•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li> <li>•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요청</li> <li>•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요청(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휘</li> <li>•피해민 지원 대책 강구 등</li> <li>•학교 휴교, 등하교 시간조정 등 지원</li> <li>•고조 및 이안류 정보 전파체계 구축·운영(해양조사원)</li> </ul>
<p><b>지역사고수습본부</b> (지방해양수산청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관할 구역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li> <li>•「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현장 임무 수행 등</li> </ul>
<p><b>중앙긴급구조통제단</b> (소방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담당</li> </ul>
<p><b>지역긴급구조 통제단</b>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담당</li> </ul>
<p><b>중앙구조본부</b> (해양경찰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 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li> <li>•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li> </ul>
<p><b>광역구조본부</b> (지방 해양경찰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li> </ul>
<p><b>지역구조본부</b> (지역 해양경찰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대 편성 및 운영</li> <li>•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대 편성·운영</li> </ul>

## 다. 위기관리기구 체계

### 1) 중앙사고수습본부



\* 반원들은 반장 소관 직원들로 구성하되, 필요시 타 부서·행정기관의 지원근무자 활용

\*\* 재난진행 상황, 피해규모 등으로 인해 상기 반 편성, 임무 및 역할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p>중앙사고수습본부장 (해양수산부 장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종합 및 관리 총괄</li> <li>•유관기관 회의소집 등 위기상황 및 대책 파악, 조정(필요시)</li> <li>•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li>•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요청(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요청</li> <li>•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지휘</li> <li>•정례브리핑</li> </ul>
<p>부 본부장 (해양수산부 차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심의.확정</li> <li>•재난 수습. 복구대책 총괄 심의</li> </ul>
<p>종합상황실장 (해양정책실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건의</li> <li>•중앙사고수습본부 종합상황실 총괄 운영</li> <li>•상황반 업무조정</li> </ul>
<p>총괄상황반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영토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li> <li>•피해정보의 수집 및 수습상황 분석자료 작성</li> <li>•재난 및 사고현황, 진행상황 판단 및 분석</li> <li>•재난상황 예보·경보 발령 등 위험수준 판단 의사결정 지원</li> <li>•재난수습 추진상황 총괄·관리</li> <li>•재난수습상황 판단회의 주관</li> <li>•재난수습상황 전파 및 재난방송 요청</li> <li>•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 주관 및 보고서 작성</li> <li>•그 밖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총괄</li> <li>•지역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요청·지휘</li> <li>•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수습 지원 및 요청</li> <li>•재난 및 사고현장 응급조치 등 수습 지원</li> <li>•사상자 구호, 구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li> <li>•중앙수습지원단 현지파견 검토 및 요청</li> <li>•긴급대응반, 현장파견관 가동 및 지원</li> </ul>
<p>복구반 (연안계획과장, 해양개발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명피해 상황 파악 및 관리</li> <li>•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금액 산정 총괄</li> <li>•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안 마련</li> <li>•피해자 응급구호 및 구호물품 지원</li> <li>•부상자 치료 및 의료지원, 사망자 유족 지원대책 등</li> </ul>
<p>재난조사반 (해양영토과장/ 국립해양조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상황 분석(해양영토과장)</li> <li>•재난 원인 조사(국립해양조사원)</li> </ul>

구 분	임무와 역할
<p style="text-align: center;">협력반 (비상안전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근무 명령</li> <li>• 종합상황실 운영장비 설치·지원 및 근무자 후생관리</li> <li>• 종합상황실 출입통제 및 운영지원</li> <li>• 관계기관 파견근무 요청 및 근무상황 관리</li> <li>• 그 밖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필요한 지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언론반 (홍보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상황 모니터링</li> <li>•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모니터링</li> <li>• 재난 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li> <li>• 재난 예·경보 발령상황 등의 전파(KBS 등 재난방송사)</li> <li>• 재난 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li> <li>•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li> </ul>

※ 반별 임무 및 역할이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장사무를 기준으로 소관 부서를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소관 부서를 정할 수 있다.

### ○ 운영

: 위기경보 “경계” 단계시 설치 준비

: 위기경보 “심각” 단계시 즉시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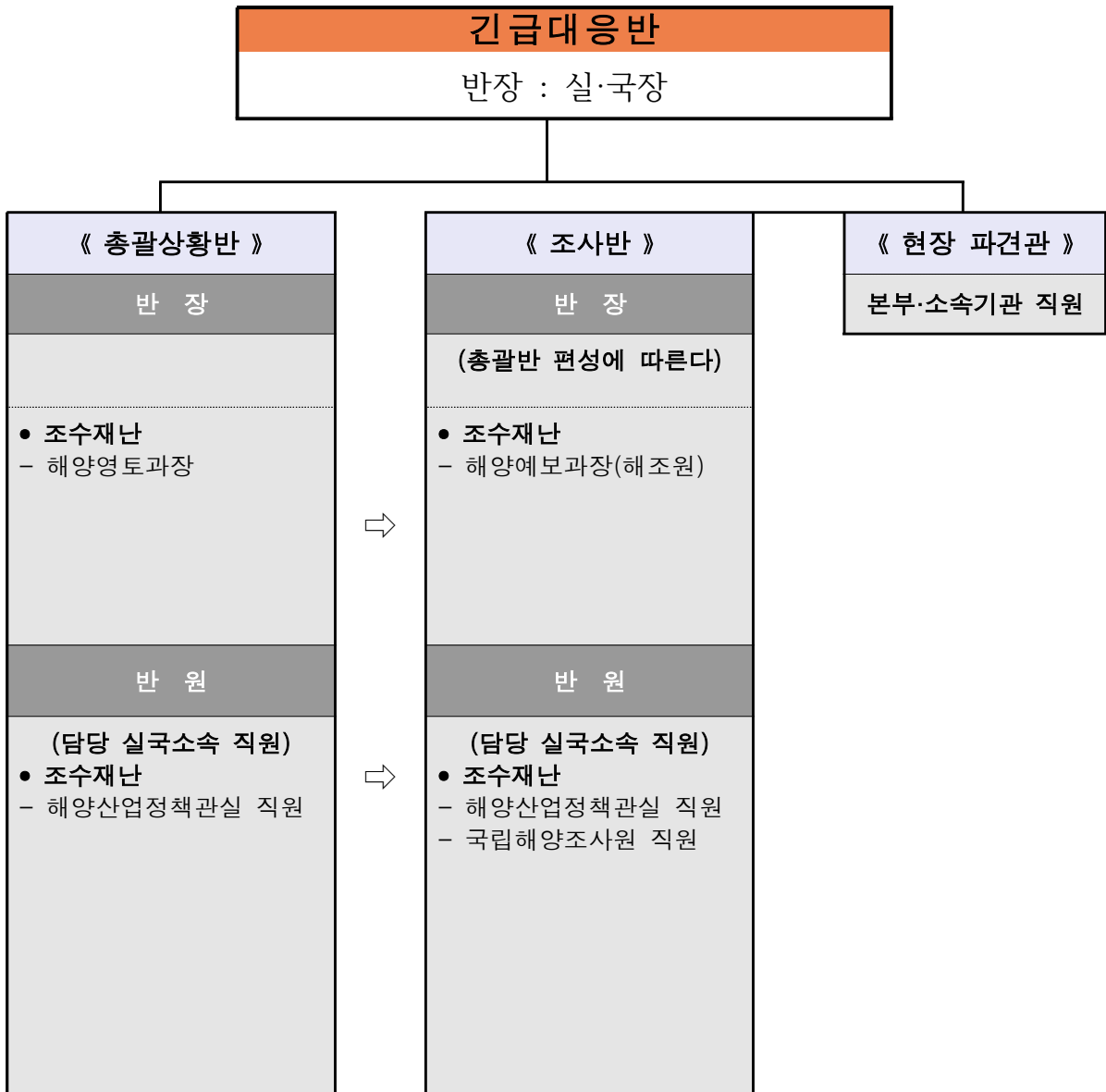
-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경우,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재난 위기대응 세부 행동요령(해양수산부, ‘15.3)’을 따름

: 재난수습상황에 따라 개편

- 반별 근무자 편성, 근무시간(09:00~익일 09:00), 임무부여 등
- 재난규모 및 재난수습 상황을 감안,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에서 보상 및 재난수습 전담 T/F로 전환

## 2) 긴급대응반 설치·운영

### ○구성



※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위기경보 ‘경계’ 수준 발령 즉시 총괄반 담당부서는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긴급대응반 구성·운영

※ 상황에 따라 실시반 구성(복구대책반, 공보지원반, 현장파견관 등) 및 인력 등은 탄력적 조정가능

※ 조사반의 근무장소는 실무매뉴얼에서 지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긴급대응반은 종료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역할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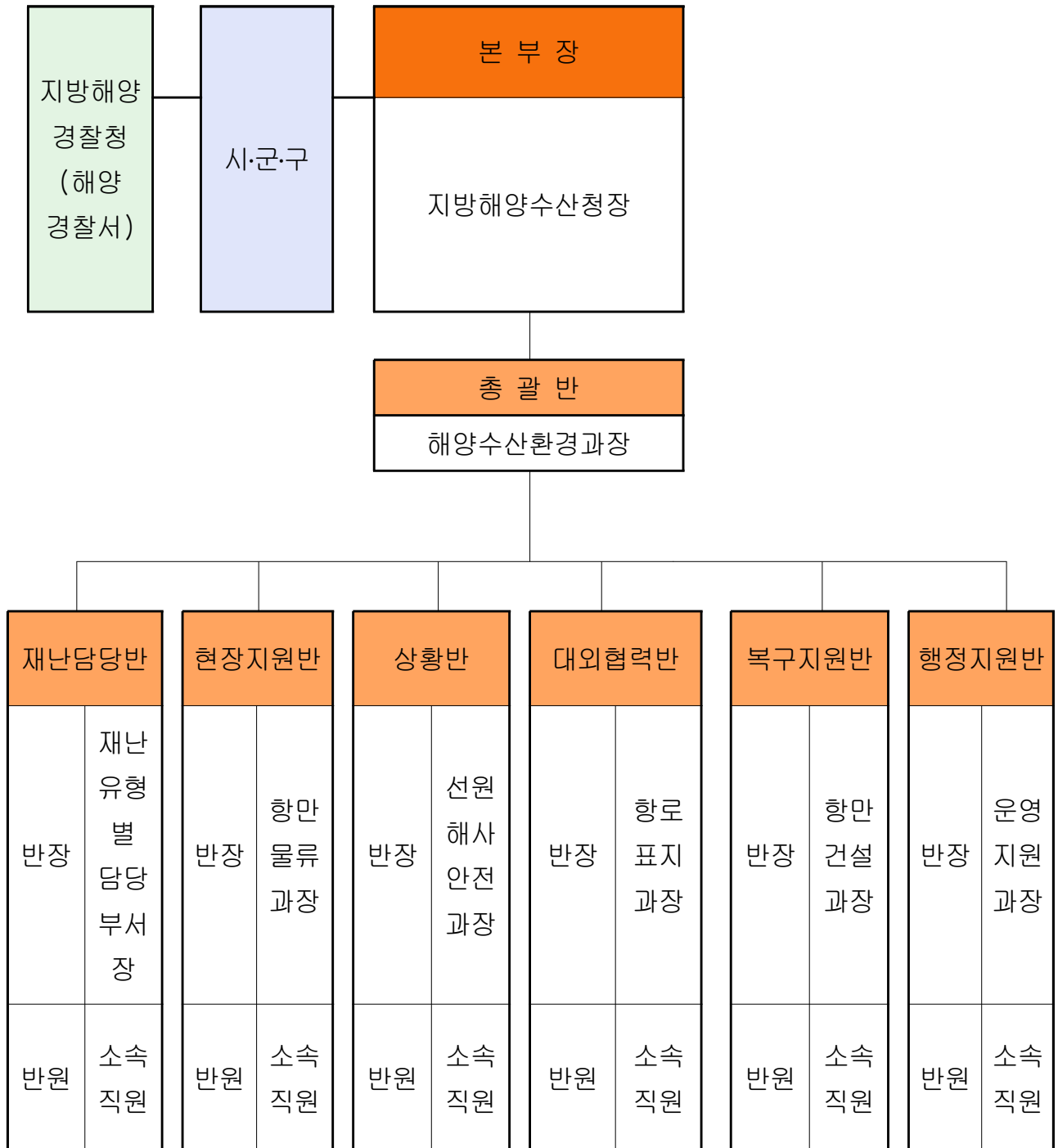
○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총괄 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반 운영 총괄, 장·차관, 안전책임관 및 반장 지시사항 관리 및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운영</li> <li>○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지휘</li> <li>○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li> <li>○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휘</li> <li>○ 해양경찰청 등 긴급구조기관과의 업무지원·협조</li> <li>○ 유사재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li> </ul>
조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정보 수집·전파</li> <li>○ 재난수습 진행상황 파악</li> <li>○ 일일상황 보고</li> <li>○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업무연락 등</li> </ul>
현장 파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가족에 재난수습 현황 설명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li> <li>○ 해수부-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조 조율</li> </ul>

※ 반별 임무 및 역할이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장사무를 기준으로 소관 부서를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소관 부서를 정할 수 있다.

### 3) 지역사고수습본부

#### ○ 구성



※ 재난담당반의 반장은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제6조(보고책임자)의 재난 유형별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함

※ 단, 지방사고수습본부장(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 각 반의 담당과, 임무, 역할 등 변경 가능

○ 임무 및 역할

구 분	반장 및 반원	임 무
총괄반	반장 : 해양수산환경과장 반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수습 총괄 지휘 및 본부장 보좌(반장)</li> <li>○ 재난수습 추진상황 종합보고서 작성</li> <li>○ 현황파악 등 지원대책 수립</li> <li>○ 재난원인 파악, 분석 및 보고</li> </ul>
사 고 담당반	반장 : 재난유형별 담당부서장 반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수습 추진상황 파악 및 보고(대내)</li> <li>○ 재난원인 조사, 분석 및 대책수립</li> </ul>
상황반	반장 : 선원해사안전과장 반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반 지휘 및 본부장 보좌(반장)</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대외 상황보고(통보)</li> <li>○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파악 및 요청</li> <li>○ 선박재난의 경우 상황 파악 및 반장 보고(정보센터)</li> </ul>
현 장 지원반	반장 : 항만물류과장 반원 : 소속직원 관공선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반 지휘,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반장)</li> <li>○ 선박,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등 방재장비 지원</li> <li>○ 재난 현장 방제 진행상황 파악 및 보고</li> <li>○ 항만내 재난 현장 선박 운항통제 및 안전 조치</li> </ul>
복 구 지원반	반장 : 항만건설과장 반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반장)</li> <li>○ 관할 항만 및 해양시설 피해 저감 및 복구 지원</li> </ul>
대 외 협력반	반장 : 항로표지과장 반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협력반 지휘, 총괄반 통보 및 본부장 보좌(반장)</li> <li>○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 및 참석결과 보고</li> <li>○ 유관기관의 재난수습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li> <li>○ 인명피해시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li> </ul>
행 정 지원반	반장 : 운영지원과장 반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지원반 지휘, 총괄반 보고 및 본부장 보좌(반장)</li> <li>○ 대책본부 설치 및 재난수습 지원 (재정, 물품, 인원 등)</li> <li>○ 언론기관 취재 협조,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총괄</li> </ul>

## 라. 우리 기관의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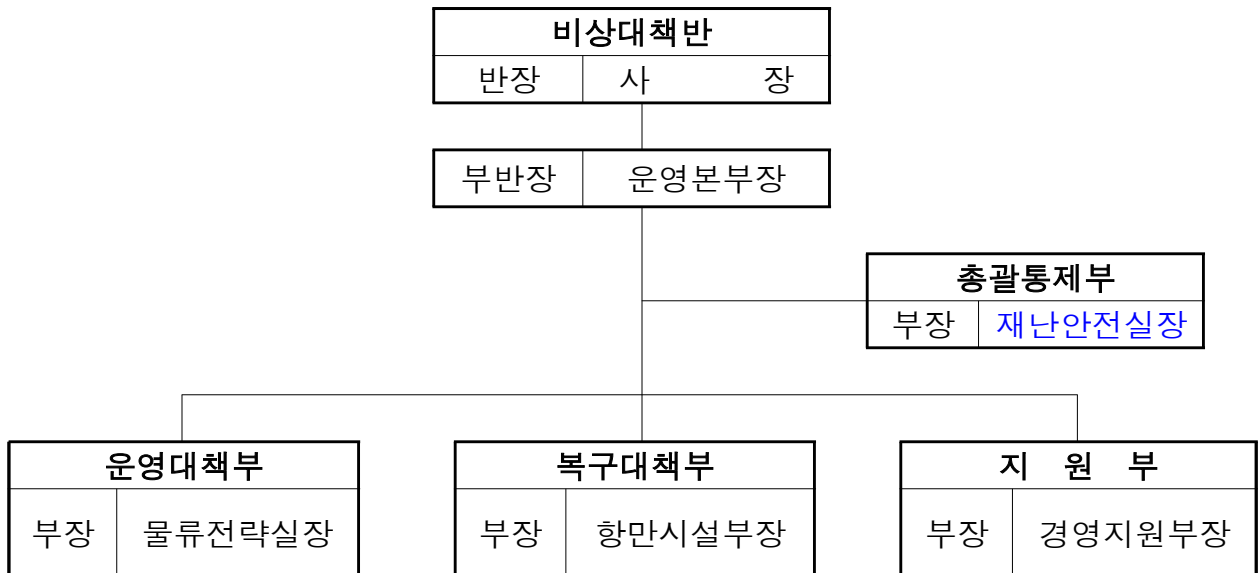
- 1) 조수 재난사고 발생 시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요청하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역사고수습본부 YGPA 대응반으로 참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내에는 상황관리반(재난안전실 2명)을 별도로 구성·운영

구분	반장 및 반원	임무와 역할
YGPA 대응반 (지역사고수습본부)	반장 : 재난안전실장 (여수지사장) 반원 : 소속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고수습본부 요청사항 지원 및 전달</li> <li>○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 및 참석결과 보고</li> <li>○ 사고선박 선석배정 등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항만운영</li> </ul>

※ YGPA 대응반장은 사고 발생지역이 광양항(광양지역) 내 사고일 경우 재난안전실장이, 광양항(여수지역) 및 여수항 내 사고일 경우 여수지사장이 담당

- 2) 지역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지 않는 항내 조수 재난사고 중 항만 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 YGPA 비상대책반 구성



- 설치 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1층 광양항 재난안전센터

※ 운영대책부장은 피해발생이 광양지역인 경우 물류전략실장이, 여수지역인 경우 여수 지사장이 담당

○ 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반장 및 반원	임무와 역할
총괄 통제부	부장 : 재난안전실장 부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 총괄 지휘 및 본부장 보좌</li> <li>○ 비상대책반 설치 및 인원 구성</li> <li>○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 및 참석결과 보고</li> <li>○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 요청</li> </ul>
운영 대책부	부장 : 물류전략실장 (여수지사장) 부원 :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수습 진행사항 파악</li> <li>○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li> <li>○ 사고현장 초기 안전조치</li> <li>○ 인명피해시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li> </ul>
복구 대책부	부장 : 항만시설부장 부원 : 운영본부 및 개발 본부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시설 피해 현황 조사 및 보고</li> <li>○ 피해경감 및 2차 사고 예방조치</li> <li>○ 복구대책 수립</li> <li>○ 표지시설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li> <li>○ 소관업무 관련 피해 발생시 복구 지원 등</li> </ul>
지원부	부장 : 경영지원부장 부원 : 경영본부 소속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책반 행정지원</li> <li>○ 필요시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li> <li>○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 위기대응 홍보 등</li> </ul>

## 4

#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가. 대응개념

- 1) 목표 :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예방
- 2) 대응방향
  - 조수재난 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피해 최소화
  - 재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활동 전개

### 나. 대응지침

- 1) 재난접수시 가능한 6하원칙에 따라 사고개요, 피해상황, 오염 여부, 긴급조치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되, 보고서 수정, 단계별 보고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
  - 2) 신속 수습을 위해 해양경찰서, 해군,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인근 자치단체 등 가용인력과 장비 총동원태세 항시 유지
  - 3)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상황보고에 있어서의 신속성과 정확성의 균형을 유지하여 적절히 조치

### 다. 판단·고려 요소

- 1) 조수재난의 유형(고조범람, 기상해일, 너울 및 이안류 등) 및 규모 등
- 2) 재난전개(피해) 양상(인명피해 발생, 침수범람피해, 시설물 피해, 유류 및 화학물질 유출 및 유출량, 유해성, 확산속도, 확산범위, 양식장 또는 항만오염 가능성 등
- 3) 인력·장비 등 지원가능한 수습자원 및 수습능력 확보 여부
- 4) 즉시 현장지원가능인력, 차량, 선박 및 해상기상(특보) 전망 등

# 5 위기경보

##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활 동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징후 감시를 통해 통계적 시기 도래, 기상요인 등에 의한 징후관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재난으로 발전 가능성은 적은 상태</li> <li>1) 조위관측소 고조정보(4단계)가 ‘주의’ 단계로 예측될 경우</li> <li>2) 너울, 기상해일, 이안류 빈발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후활동 감시 및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 점검</li> </ul>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날 때</li> <li>1) 조위관측소 고조정보(4단계)가 ‘경계’ 단계로 예측될 경우</li> <li>2) 너울, 기상해일, 이안류 발생가능성이 있고 너울, 기상해일, 이안류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수 감시</li> <li>•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li> </ul>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li> <li>1) 조위관측소 고조정보(4단계)가 ‘위험’ 단계로 예측되어 소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li> <li>2) 너울, 기상해일, 이안류 발생가능성이 있고 너울, 기상해일, 이안류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예상지역 안전강화 및 대응태세 마련 (지역사고수습본부, 긴급대응반 구성·운영 등)</li> </ul>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li> <li>1) 조위관측소 고조정보(4단계)가 ‘위험’ 단계로 예측되어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li> <li>2) 너울, 기상해일, 이안류 발생가능성이 있고 너울, 기상해일, 이안류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각 태세 돌입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li> </ul>

\*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단, 위기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발령을 위한 기준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 나. 위기경보 절차

### 1) 경보원칙

- 가) 위기경보발령은 위기평가 결과, 위기상황의 특성, 전개속도, 피해확대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 나) 재난 유형이 복잡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위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다) 피해범위가 한정되고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재난의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역단위 위기경보 발령 가능
- 라) 위기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완만진행형(고조), 결과수습형(너울, 이안류, 기상해일), 순간증폭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완만진행형은 순차적 또는 상황변화에 따라 경보 발령, 결과수습형은 바로 심각 경보 발령, 순간증폭형은 2차 피해가 발생 가능한 시점 확인 및 심각 경보 발령 가능
- 마) 다만, 재난 유형별로 진행상황 변화에 따라 3가지 유형이 혼재하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기경보 발령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 바) 너울, 이안류 및 기상해일은 결과수습형으로 위험정도가 순간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즉시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함

### 2) 발령절차



가) 주관기관(해양수산부)은 조수에 의한 이상 징후가 포착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위기경보 발령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협 또는 위험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다만, 긴급시 SNS, 유·무선 및 영상 회의로 개최 가능)

※ 백중사리 전후 및 하계 입욕철 기간에는 위기경보 “주의” 수준 유지(국립해양조사원 발표자료 참조)

나) 상황판단회의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 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다) 해양수산부는 상황판단회의에서 확정된 위기경보 발령시간, 위기경보수준(관심·주의·경계)을 즉시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연재난대응과)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공문으로 통보

라)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의 경보 발령과 해제 또는 위기경보(심각) 수준을 조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과 사전협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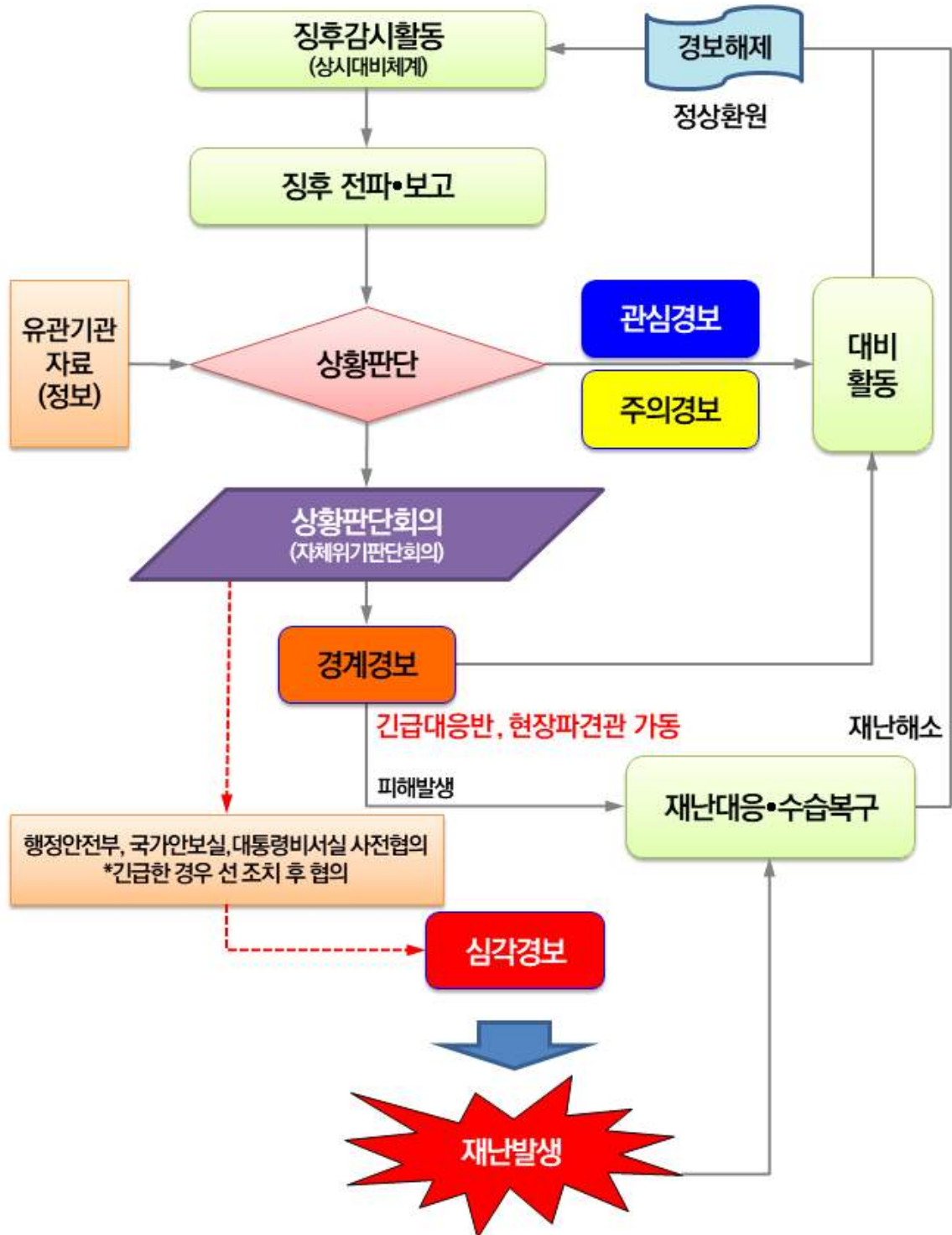
마)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우선 사전조치(위기경보 발령)를 시행한 후 즉시 최단시간내 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과 협의

바)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재난 발생시 접수기관은 초동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해양경찰청,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등에 협조요청

사) 유관기관(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등)은 적절한 경보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징후와 관련된 자료(정보)를 주관기관(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또는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대통령비서실에 제공

## 〈조수재난 위기경보 발령체계〉

○ 경보 발령 : 자체 상황판단회의(주재 : 운영본부장)



### 위기상황판단/평가회의 보고서

위기유형			
경보내용			
보고번호		기관명	
관련근거(출처)			
통보기관			
1. 관련 상황/정보			
2. 분석/판단			
3. 조치사항			
작성자	직책 (성명) (전화)		

## Ⅲ.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Ⅲ.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1 관심(Blue)

##### 가. 상황

- 개요 : 00년 00월 00일 00시 현재, 전라남도(광양시, 여수시) 연안 일부지역에서 백중사리 시 저기압이동으로 인한 고조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피해 : 현재까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백중사리 시기로 해안가의 고조 상승이 예측되고 있으며, 저기압 통과로 해수면 상승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위기징후 식별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	재난안전실 여수지사, 물류전략실
(나) 긴급조치	(나-1) 수색·구조활동 지원 (나-2) 안전조치 이행 (나-3) 비상소집	재난안전실 여수지사, 물류전략실
(다) 보고 및 전파		재난안전실
(라) 위기경보 접수		재난안전실
(마) 위기경보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재난안전실 여수지사, 물류전략실
(바)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재난안전실

## 2) 조치내용

### (가) 위기징후 식별

#### 가-1. 재난접수 및 상황파악(부록 1의 서식 1)

- 신고자 : 피해자 또는 재난상황 목격자
- 접수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해양긴급신고 122),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 보고·통보 : 재난을 접수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신속히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로 보고

#### 가-2. 상황파악 요령

-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르되 행정안전부(해경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정보 입수

#### 가-3. 상황파악 요소

- 재난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인적·물적 피해, 오염 여부
- 시설피해, 오염물질 확산 여부, 부근 지역 및 해역 교통 장애 여부
- 해상·기상의 상태, 해경·해군 등 구조세력 출동상황, 응급조치 사항

### (나) 긴급조치

#### 나-1. 수색·구조 활동

- 협조요청기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관할 자치 단체 등
- 협조요청사항 : 인력·장비 지원 및 수색·구조 활동 지원

## 나-2. 안전조치 이행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 항만공사 및 경찰청의 통제 하에 재난지역 및 인근해역의 운항 및 부두접안 등 통제 실시
- 항행안전방송 실시(지방 해양경찰청 VTS센터 협조)
- 고조범람, 월파침수로 항행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해상부유물이나 해양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유류, 화학약품, 분뇨 등) 등 제거 명령 조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해상안전법(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배타적 경제수역법(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애물 소유자(점유자,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포함)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제거 명령

- 유류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시 소유자에 대한 방제명령 (해양경찰청)

## (다) 보고 및 전파

### 다-1. 보고 및 전파요령

- 최초 상황보고는 유·무선으로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라 보고하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을 중심으로 신속·간결·명료하게 보고
- 추가사항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2보, 3보 등 추보 실시
- 인터넷, 유·무선, 팩스,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파



## 다-2. 보고 및 전파 대상 기관

-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여수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 (라) 위기경보 접수

#### 라-1. 해양수산부로부터 “관심” 경보 접수

- 주요 위기 상황 및 우리 공사 해당사항 파악 등

### (마) 상황관단회의(위기경보 수준 평가)

마-1. 개최시기 : 조수로 인한 재난징후를 포착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마-2. 소집자 : 재난안전실장

마-3. 참석대상

- 운영본부장(주관), 물류전략실장, 재난안전실장, 항만개발부장, 여수지사장, 항만시설부장, 뉴딜사업실장

\*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요청

마-4. 회의주재 : 운영본부장. 다만, 운영본부장 부재시 참석자 중 직제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하되, 긴급시에는 회의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마-5. 회의방법 :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일 경우 유·무선 회의로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통화내역을 상세히 기록

마-6. 평가내용 : 조수재난에 따른 위험수준 평가, 광양항 재난 대비 필요사항 점검, 비상대책반 구성 여부

마-7. 평가결과 보고(부록 1의 서식 2)

- 장·차관 및 관계부서에 보고(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전파,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파

#### (마)위기경보 발령 전파

마-1. 발령 전파시기 : 해수부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지시 하달 시

마-2. 발령 전파권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시행자 : [재난안전실](#))

마-3. 발령 전파사항 : 위기경보 수준 및 조치사항, 상황보고서에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위기경보 발령 전파

마-4. 전파기관 : 각 부두 운영사 및 자회사 등 유관기관

마-5.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재난 발생 시 사고 접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동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등에 협조 요청

## 사.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사-1. 사고 대응체계 점검

- 여수광양항만공사 “YGPA 대응반” 편성요원을 확인하고, 부재 시 대리근무자 편성
- 출동 인원·장비 대응태세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 기관별 담당부서 및 담당관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등)

### 사-2.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험정보 수집

### 사-3. 위기경보 변경(해제) 등 상황 전파 및 상황별 조치사항 종합정리

## 자.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자-1. 해제 결정 및 전파

### 자-2. 재난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필요 시)

## 다.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구 분	내 용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점검</li><li>• 해상교통 안전시설 및 복구 관련 시설·장비 확인·점검</li><li>•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등</li><li>• 행정안전부의 수색·구조 지원</li></ul>

국립해양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면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조정보(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위험) 고도화 및 운영</li> </ul> </li> <li>• 이안류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안류 정보(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위험) 고도화 및 운영</li> </ul> </li> <li>• 이상고파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마련</li> <li>• 조수 포함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li> <li>• 국가해양관측망(조위관측소, 해양관측부이 등) 점검</li> <li>• 해양예측 시스템 점검 및 예측</li> <li>• 조수재난 지역 및 해역 측량자료 검토</li> <li>• 조수재난 지역 및 해역 해도(종이, 전자해도) 확인</li> <li>•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표류물, 침몰·좌초 등 긴급 사항 발생시 항행경보 발령</li> </ul>
해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위기종합상황실 가동을 통한 정보수집 강화</li> <li>• 주관기관과 연계한 상황모니터링 및 보고</li> <li>• 매뉴얼 관리·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침 시행</li> <li>• 인명구조·구급 및 민방위 장비 점검 정비 확인</li> <li>• 주관기관 상황분석 및 각종 정보 수집·전파</li> <li>• 수색구조 지원시스템 및 협력체계 구축 강화</li> <li>• 유류오염 방제 체계 운영 계획 수립</li> </ul>
여수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기상정보(기상해일, 너울) 등 주관·유관기관 제공 강화</li> </ul>
여수·광양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피해예상지역 경찰력 확인 및 배치계획 검토</li> </ul>
여수시 광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계획 수립</li> <li>•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의 확보, 비축 계획 수립</li> <li>• 조수재난 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피해 원인조사 계획 수립</li> </ul>
여수광양 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등</li> </ul>

## 2 주의(Yellow)

### 가. 상황

- 개요: 00년 00월 00일 00시 현재, 전라남도(광양시, 여수시) 연안 일부지역에서 백중사리 시 저기압이동으로 인한 고조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광양시의 물양장의 경우에는 범람이 시작되고 있으며, 하수관을 통한 해수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피해 : 현재까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백중사리 시기로 해안가의 고조 상승이 예측되고 있으며, 저기압 통과로 해수면 상승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광양시의 물양장의 경우에는 해수범람 및 인근 해안도로에서는 하수관을 통한 해수역류 현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음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징후 식별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	재난안전실    여수지사, 물류전략실
(나) 긴급조치	(나-1) 수색·구조활동 지원 (나-2) 안전조치 이행 (나-3) 비상소집	재난안전실    여수지사, 물류전략실
(다) 보고 및 전파		재난안전실
(라) 위기경보 접수		재난안전실
(마) 위기경보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재난안전실    뉴딜사업실 항만시설부, 항만개발부
(바)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재난안전실

## 2) 조치내용

### (가) 위기징후 식별

#### 가-1. 재난접수 및 상황파악(부록 1의 서식 1)

- 신고자 : 피해자 또는 재난상황 목격자
- 접수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해양 긴급 신고 122), 여수광양항만공사
- 보고·통보 : 재난을 접수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 안전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신속히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로 보고(통보)

#### 가-2. 상황파악 요령

- 가능한 6하원칙에 따르되 행정안전부(해경본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정보 입수

#### 가-3. 상황파악 요소

- 재난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인적·물적 피해, 오염 여부
- 시설물 및 해양오염피해 여부, 부근 지역 및 해역의 교통장애 여부
- 해상·기상의 상태, 해경·해군 등 구조세력 출동상황, 응급조치 사항

### (나) 긴급조치

### 나-1. 수색·구조 활동 지원

- 행정안전부(해경), 국방부(해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자치 단체 등과 함께 수색·구조 활동 및 인력·장비 지원

### 나-2. 안전조치 이행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 항만공사의 통제하에 재난지역 및 인근 해역의 차량운행, 선박운항 및 부두 접안 통제 실시
  - 항행안전방송 실시(여수해양경찰서안전본부 VTS센터 협조)
  - 고조범람, 월과침수로 항행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해상부유물이나 해양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유류, 화학약품, 분뇨 등) 등 제거 명령 조치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해사안전법(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배타적 경제수역법(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애물 소유자(점유자,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포함)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제거 명령
- 유류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시 소유자에 대한 방제명령 (여수해양경찰서)

### 나-3. 비상소집 (필요 시)

- 소집명령 : 사장의 명에 따라 총괄부장이 소집
  - 소집대상 : 관련부서 담당자 및 직원
- \* 비상소집 대상은 사고의 유형과 전개양상,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필요 시 유관기관 참여 조치

## (다) 보고 및 전파

### 다-1. 보고 및 전파요령

- 최초 상황보고는 유·무선으로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라 보고하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을 중심으로 신속·간결·명료하게 보고
- 추가사항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2보, 3보 등 추보 실시
- 인터넷, 유·무선, 팩스,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파

### 다-2. 보고 및 전파 대상 기관

-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해경안전서,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 (라) 상황판단회의(위기경보 수준 평가)

라-1. 개최시기 : 조수로 인한 재난 징후를 포착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라-2. 소집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장**

### 라-3. 참석대상

- 운영본부장(주관), 물류전략실장, **재난안전실장**, **항만개발부장**,  
여수지사장, 항만시설부장, 뉴딜사업실장

\*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요청

라-4. 회의주재 : 운영본부장. 다만, 운영본부장 부재시 참석자 중



직제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하되,  
긴급시에는 회의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라-5. 회의방법 :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일 경우  
유·무선 회의로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통화내역을 상세히 기록

라-6. 평가내용 : 조수재난에 따른 위험수준 평가, 광양항 재난  
대비 필요사항 점검, 비상대책반 구성 여부

라-7. 평가결과 보고(부록 1의 서식 2)

- 장·차관 및 관계부서에 보고(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전파,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파

#### (마) 위기경보 발령 전파

마-1. 발령 전파시기 : 해수부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지시 하달 시

마-2. 발령 전파권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시행자 :  
재난안전실장)

마-3. 발령 전파사항 : 위기경보 수준 및 조치사항, 상황보고서에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위기경보 발령 전파

마-4. 전파기관 : 각 부두 운영사 및 자회사 등 유관기관

마-5. 위기경보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재난 발생 시 사고 접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동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없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 (해양경찰서 및 소방서, 군부대 등) 등에 협조 요청

## (바) 위기경보 접수

### 바-1. 해양수산부로부터 “주의” 경보 접수

- 주요 위기 상황 및 우리 공사 해당사항 파악 등

## (사)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 사-1. 재난대응 체계 점검

-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사고 수습본부 지원반” 편성요원을 확인하고, 부재시 대리근부자 편성
- 출동인원 및 장비 작동여부, 물자확보 등 대응태세 점검

### 사-2. 위기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위험정보 수집(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등 협조)

- 조수재난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정보를 수집하여 유관기관에 전파
- 안전실태 점검

## (아)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아-1. 위기경보 해제 접수 및 전파

- 지역사고수습본부 상황회의 결과에 따른 위기 경보 해제 및 상황 접수 및 전파

### 아-2.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필요시)

## 다.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징후 파악, 보고 및 초동조치 이행</li> <li>•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필요 여부 검토</li> <li>• 선박구조 요청시 지방해양경찰청에 협조 요청</li> <li>• 선박검사기관과 합동점검반 가동 준비</li> <li>• 관계기관 및 사고선박 관련자 등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li> <li>• 행정안전부의 수색·구조 지원</li> </ul>
국립해양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해양관측망 실시간 관측자료 제공(필요시)</li> <li>• 해수면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조정보(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위험) 고도화 및 운영</li> </ul> </li> <li>• 이안류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안류 정보(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위험) 고도화 및 운영</li> </ul> </li> <li>• 이상고파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마련</li> <li>• 조수 포함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li> <li>• 재난예상 해역 예측 활동 집중 실시</li> <li>• 재난예상 해역 측량자료 상세 검토</li> <li>• 재난예상 해역 해도 관련내용 확인</li> <li>• 항행경보 발령 준비</li> </ul>
해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위기종합상황실 가동을 통한 정보수집 강화</li> <li>• 주관기관과 연계한 상황모니터링 및 보고</li> <li>• 매뉴얼 관리·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침 시행</li> <li>• 인명구조·구급 및 민방위 장비 점검 정비 확인</li> <li>• 주관기관 상황분석 및 각종 정보 수집·전파</li> <li>• 수색구조 지원시스템 및 협력체계 구축 강화</li> <li>• 유류오염 방제 체계 운영 계획 수립</li> </ul>
국방부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동원체계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수립</li> <li>• 피해현장 신속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수립</li> </ul>
여수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기상정보(기상해일, 너울) 등 주관·유관기관 제공 강화</li> </ul>
여수·광양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피해예상지역 경찰력 확인 및 배치계획 검토</li> </ul>
여수시 광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계획 수립</li> <li>•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의 확보, 비축 계획 수립</li> <li>• 조수재난 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피해 원인조사 계획 수립</li> </ul>
여수광양 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징후 파악, 보고·전파(해수부, 여수청 등) 및 초동조치</li> <li>•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등</li> <li>•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직원 비상소집(필요 시)</li> </ul>

### 3 경계(Orange)

#### 가. 상황

- 개요 : 00년 00월 00일 00시 현재, 전라남도(광양시, 여수시) 연안 일부지역에서 백중사리 시 저기압이동으로 인한 고조 상승
- 피해 : 00시의 00항의 물양장과 배후 야적장이 침수되고, 해안도로를 따라 가옥 14채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함. 해안도로를 따라 달라던 승용차가 침수로 인하여 고립됨. 00시 00동 00어시장의 침수로 인하여 상가 20동과 상인 30여명이 고립되었으며, 배후 오폐수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징후 식별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	재난안전실, 여수지사, 물류전략실
(나) 긴급조치	(나-1) 수색·구조활동 (나-2) 안전조치 이행 (나-3) 비상소집	재난안전실, 여수지사, 물류전략실
(다) 보고 및 전파		재난안전실
(라) 위기경보 접수		재난안전실
(마) 조수대응조직 설치가동		재난안전실
(바) 현장수습활동		재난안전실, 뉴딜사업실, 향만시설부, 향만개발부
(사)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재난안전실

## 2) 조치내용

### (가) 위기징후 식별

####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부록 1의 서식 1)

- 신고자 : 피해자 또는 재난현장 목격자
- 접수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안전서, 여수광양항만공사(해양긴급 신고 122)
- 보고·통보 : 재난을 접수한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신속히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로 보고(통보)

#### 가-2. 상황파악 요령

-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르되 행정안전부(해경본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정보 입수

#### 가-3. 상황파악 요소

- 재난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인적·물적 피해, 오염 여부
- 시설물 피해, 환경오염 여부, 부근 지역 및 해역 교통장애 여부
- 해상·기상의 상태, 해경·해군 등 구조세력 출동상황, 응급조치 사항

### (나) 긴급조치

#### 나-1. 수색·구조 활동 지원

- 협조요청기관 : 행정안전부(해경), 국방부(해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자치 단체 등과 함께 수색·구조 활동 및 인력·장비 지원
- 협조요청사항 : 인력·장비 지원 및 수색·구조 활동 지원

## 나-2. 안전조치 이행

-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 항만공사의 통제하에 재난인근지역 및 해역의 차량, 선박운항 및 부두 접안 통제 실시
  - 항행안전방송 실시(지방해양경찰서안전본부 VTS센터 협조)
  - 고조범람, 역류침수로 교통안전 및 항행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해양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유류, 화학약품, 분뇨 등) 등 제거 명령 조치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해사안전법(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배타적 경제수역법(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애물 소유자(점유자,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포함)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제거 명령
- 유류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시 소유자에 대한 방제명령 (해양경찰청)

## 나-3. 비상소집

- 사고의 유형과 전개양상,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사장(또는 운영본부장)의 명에 따라 총괄부장이 소집

### (다) 보고 및 전파

#### 다-1. 보고 및 전파요령

- 최초 상황보고는 유·무선으로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라 보고하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을 중심으로 신속·간결·명료하게 보고

- 추가사항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2보, 3보 등 추보 실시
- 인터넷, 유·무선, 팩스,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파

다-2. 보고 및 전파 대상 기관

-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해경,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라) 상황판단회의(위기경보 수준 평가)

라-1. 개최시기 : 조수로 인한 재난 징후를 포착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라-2. 소집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장**

라-3. 참석대상

- 운영본부장(주관), 물류전략실장, **재난안전실장**, **항만개발부장**,  
여수지사장, 항만시설부장, 뉴딜사업실장

\*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요청

라-4. 회의주재 : 운영본부장. 다만, 운영본부장 부재시 참석자 중 직제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하되, 긴급시에는 회의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라-5. 회의방법 :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일 경우 유·무선 회의로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통화내역을 상세히 기록

라-6. 평가내용 : 조수재난에 따른 위험수준 평가, 광양항 재난 대비 필요사항 점검, 비상대책반 구성 여부

라-7. 평가결과 보고(부록 1의 서식 2)

- 장·차관 및 관계부서에 보고(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전파,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파

(마) 위기경보 접수

마-1. 해양수산부로부터 “경계” 경보 접수

- 주요 위기 상황 및 우리 공사 해당사항 파악 등

(바) 사고대응조직 설치가동 (필요 시)

바-1. 비상대책반 설치 준비

바-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사) 현장 수습활동

사-1. 지방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사-2. 긴급구조활동 실시 : 행정안전부(해경, 소방), 국방부(해군) 등

사-3. 인명 구조 및 방제활동 지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사-4. 현장통제, 경계구역 선정 등 차량이동, 선박통행 제한 등



(아)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아-1. 재난지역 복구 지원

아-2. 위기경보 해제 접수 및 전파

- 지역사고수습본부 상황회의 결과에 따른 위기 경보 해제 상황 접수 및 전파

아-3.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필요시)

나.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지역사고 수습본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li> <li>• 재난발생 관련 신속 보고·전파 및 공유체계 강화</li> <li>•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li> <li>• 재난 대응체계 가동, 유관기관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인력·장비 동원 협조 요청</li> <li>- 지방해양경찰청의 구조·방제작업 등 지원 요청</li> </ul> </li> <li>• 피해확산 방지 활동 / 선박운항 통제 등</li> </ul>
국립해양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조정보(4단계), 이안류 정보(4단계)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li> <li>• 긴급해양관측장비 및 선박 점검</li> <li>• 재난위험 해역 예측 활동 집중 실시</li> <li>• 재난위험 해역에 대한 측량자료 정밀 검토</li> <li>• 재난위험 해역 항행경보 발령</li> </ul>
해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주관기관 및 재난현장과 연계한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li> <li>• 지휘·통신망 및 피해사례 파악</li> <li>• 상황관리체계 확립 및 긴급대응체계 구축</li> <li>•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li> <li>• 소방력 동원 대응태세 유지</li> </ul>
국방부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동원체계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가동</li> <li>• 피해현장 신속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유지</li> </ul>
여수·광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태세 유지</li> <li>•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 도로통제사항 발생시 즉시 통제</li> </ul> </li> </ul>
여수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기상정보(기상해일, 너울) 등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li> </ul>

부 서	임무 및 역할
여수시 광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및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li> <li>• 긴급 지원체계 가동 및 재난방송 실시, 취약지역 순찰강화</li> <li>• 비상사태시 주민보호방안 강구</li> <li>• 소관 분야 피해시설물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li> <li>• 재난취약지역, 위험지역 출입통제(교통, 시설물 등)</li> <li>• 해안오염 방제를 위한 기자재 등 확보</li> </ul>
여수광양 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보고·전파(해수부, 여수청 등)</li> <li>•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li> <li>• 비상대책반 설치·운영(필요시)</li> <li>• 소관 항만시설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추진</li> </ul>

## 4 심각(Red)

### 가. 상황

- 개요 : 00년 00월 00일 00시 현재, 전라남도(광양시, 여수시) 연안 일부지역에서 백중사리 시 저기압이동으로 인한 고조 상승
- 피해 : 00시 00동, 00동 및 00어시장의 침수로 인하여 주택 200여동, 상가 150동이 침수되고, 주민 및 상인 등 수해 이재민이 1,200여명이 발생하였음.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가) 위기징후 식별	(가-1) 사고접수 및 상황 파악	재난안전실 여수시지사, 물류전략실
(나) 긴급조치	(나-1) 수색·구조활동 지원 (나-2) 안전조치 이행 (나-3) 비상소집	재난안전실 여수지사, 물류전략실
(다) 보고 및 전파		재난안전실
(라) 위기경보 접수		재난안전실
(마) 사고대응조직 설치가동		재난안전실
(바) 현장수습활동		재난안전실 뉴딜사업실 항만시설부, 항만개발부
(사)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재난안전실

## 2) 조치내용

### (가) 위기징후 식별

#### 가-1. 재난접수 및 상황파악(부록 1의 서식 1)

- 신고자 : 피해자 또는 재난현장 목격자
- 접수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여수광양항만공사(해양긴급 신고 122)
- 보고·통보 : 재난을 접수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신속히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로 보고(통보)

#### 가-2. 상황파악 요령

-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르되, 행정안전부(해경본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정보 입수

#### 가-3. 상황파악 요소

- 재난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인적·물적 피해, 오염 여부
- 시설물피해, 환경오염 확산 여부, 부근 해역 교통 장애 여부
- 해상·기상의 상태, 해경·해군 등 구조세력 출동상황, 응급조치 사항

### (나) 긴급조치

#### 나-1. 수색·구조 활동 지원

- 행정안전부(해경), 국방부(해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자치 단체 등과 함께 수색·구조 활동 및 인력·장비 지원

## 나-2. 안전조치 이행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제하에 사고인근 해역 운항 및 부두 접안 통제 실시
  - 항행안전방송 실시(지방해양경찰서안전본부 VTS센터 협조)
  - 고조범람, 월파침수로 항행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해상부유물이나 해양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유류, 화학약품, 분뇨 등) 등 제거 명령 조치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해사안전법(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배타적 경제수역법(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애물 소유자(점유자,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포함)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제거 명령
- 유류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시 소유자에 대한 방제명령 (해양경찰서)

## 나-3. 비상소집

- 소집명령 : 사장(또는 운영본부장)의 명에 따라 총괄부장이 소집
  - 소집대상 : 비상대책반 구성원
- \* 비상소집 대상은 사고의 유형과 전개양상,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 (다) 보고 및 전파

### 다-1. 보고 및 전파요령

- 최초 상황보고는 유·무선으로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라 보고하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을 중심으로 신속·간결·

명료하게 보고

- 추가사항은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2보, 3보 등 추보 실시
- 인터넷, 유·무선, 팩스,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파

다-2. 보고 및 전파 대상 기관

-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해경안전서,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라) 상황판단회의(위기경보 수준 평가)

라-1. 개최시기 : 조수로 인한 재난 징후를 포착하거나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라-2. 소집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

라-3. 참석대상

- 운영본부장(주관), 물류전략실장, 재난안전실장, 항만개발부장,  
여수지사장, 항만시설부장, 뉴딜사업실장

\*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요청

라-4. 회의주재 : 운영본부장. 다만, 운영본부장 부재시 참석자 중 직제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하되, 긴급시에는 회의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라-5. 회의방법 :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유·무선 회의로 의견을 취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통화내역을 상세히 기록

라-6. 평가내용 : 조수재난에 따른 위험수준 평가, 광양항 재난 대비 필요사항 점검, 비상대책반 구성 여부

라-7. 평가결과 보고(부록 1의 서식 2)

- 장·차관 및 관계부서에 보고(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전파, 긴급시, 상황보고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파

#### (마) 위기경보 접수

마-1. 해양수산부로부터 “심각” 경보 접수

- 주요 위기 상황 및 우리 공사 해당사항 파악 등

#### (바) 비상대책반 설치가동

바-1. 비상대책반 설치 가동

바-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사) 현장 수습활동

사-1.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사-2. 인명구조 및 방제활동 협조·지원(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사-3. 현장통제, 경계구역 선정 등 차량이동, 선박통행 제한 등

(아)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아-1. 재난지역 복구 지원

아-2. 위기경보 해제 접수 및 전파

- 지역사고수습본부 상황회의 결과에 따른 위기 경보 해제 상황 접수 및 전파

아-3.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필요시)

다.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지역사고수습본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에 따른 지원·협조</li> <li>•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신속 보고·전파 및 공유체계 집중 강화</li> <li>• 재난대응체계 가동, 유관기관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인력·장비 동원 협조 요청</li> <li>- 지방해양경찰청의 구조·방제작업 등 지원</li> <li>- 사상자 발생시 이송 등 지원</li> </ul> </li> <li>• 부표설치 및 인양·예인, 오염제거 등 사후처리 등 피해확산 방지 활동 및 선박운항 통제 강화 등</li> </ul>
국립해양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조 정보(4단계), 이안류 정보(4단계)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li> <li>• 긴급구조 및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해도 제공</li> <li>• 재난해역 긴급해양관측장비 설치 및 실시간 관측자료 제공(필요시)</li> <li>• 재난해역의 해양예보 정보 제공</li> <li>• 3차원 해저지형도 등 재난해역 수로측량 정보 제공(필요시)</li> <li>• 재난해역 항행경보 지속 발령 및 항행통보</li> </ul>
해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 검토</li> <li>•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li> <li>• 대응상황 종합평가를 통한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li> <li>•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조사·평가(필요시)</li> <li>• 해상 수색·구조 및 사후처리 지원</li> <li>• 피해 발생지역의 해상 치안 유지</li> <li>• 인력·장비 등 피해복구 지원</li> <li>•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조 및 대응 지원 요청</li> </ul>

부 서	임무 및 역할
국방부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 인력·장비 지원 준비 및 인명구조 지원</li> <li>• 중앙부처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li> </ul>
여수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기상정보(기상해일, 너울) 등 주관·유관기관 제공</li> </ul>
여수·광양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li> <li>•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li> <li>- 긴급 도로통제사항 발생시 즉시 통제</li> </ul>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을 통한 복구 작업 수행</li> <li>• 긴급 지원체계 가동</li> <li>• 피해사항 파악 및 긴급물자 지원</li> <li>• 소관 분야 피해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li> <li>• 재난취약 지역 등 피해 예상 시설물 피해사항 파악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li> <li>• 시·도는 현장조치 매뉴얼, 해안인근 시·군·구는 해안긴급 방제실행</li> <li>• 생태계 복원 등 피해복구대책 실행</li> </ul>
여수·광양 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보고·전파(해수부, 여수청 등)</li> <li>•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li> <li>• 비상대책반 설치·운영</li> <li>• 소관 항만시설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추진</li> </ul>



## I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I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1 발생상황(가정)

#### 가. 상황

##### 1) 개요

- 2014년 7월 15일 전라남도(해남, 진도, 완도, 장흥, 보성, 강진) 남부지역 일대에서 백중사리 시 저기압이동으로 인한 고조범람이 발생하여 00군 00면에서 주민 2명 사망, 3명이 실종되고, 00군 00항에서 물양장, 어시장 침수피해, 00군 일원에서 수산증양식시설 11개소 손괴, 등대시설, 유류창고 등 2개소 침수로 유류오염이 발생한 조수재난임

##### 2) 세부 내용

- 일시 : 2014. 7. 15., 20:00
- 장소 : 전라남도(해남, 진도, 완도, 장흥, 보성, 강진) 남부해안 일원
- 피해
  - 인적피해 : 주민 2명 사망, 3명 실종
  - 물적피해 : 00군 00면에서 주민 2명 사망, 3명이 실종되고, 00군 00항에서 물양장, 어시장 침수피해, 00군 일원에서 수산증양식시설 11개소 손괴, 등대시설, 등대유류창고 등 2개소 침수피해
  - 기타 : 00군 일원에서 등대유류창고 침수피해로 선박용 경유가

유출중이며 조류의 영향으로 유출유는 항외측 방향으로 이동 중으로 사고해역 인근의 양식장 피해가 예상됨

### 3) 기 타

- 기상상태 : 풍향은 북북서에 바람은 초속 10미터, 파고는 약 1.5미터로 향후 24시간내 더 악화될 것으로 예보
  - 고조 “위험” 경보
  - 예상최대조고(만조시간) : 21시 420cm(7월 16일 03:00, 16일 09:09)
- 언론보도 : 백중사리에 의한 조수 범람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시설물 침수, 유류유출로 연안 주변 양식장 피해도 우려되며, 사고발생 시간대가 야간이고 기상상태 불량으로 긴급 수색 및 구조에 어려움 예상

##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 부 내 용	비 고
(가) 초동조치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	재난안전실 물류전략실 여수지사
(나) 긴급조치	(나-1) 긴급 수색·구조활동 지원 (나-2) 안전조치 이행	재난안전실 물류전략실 여수지사
(다) 비상소집	(다-1) 비상소집	재난안전실
(라) 위기경보 접수		재난안전실
(마) 사고대응조직 설치		재난안전실
(바) 사고수습활동		재난안전실 뉴딜사업실 항만시설부 항만개발부
(사)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재난안전실

## 2) 조치내용

### (가) 초동조치

#### 가-1. 사고접수 및 상황파악(부록 1의 서식 1)

- 신고자 : 피해자 또는 재난상황 목격자
- 접수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여수광양

항만공사(해양긴급신고 122)

- 보고·통보 : 지방해양수산청, 행정안전부(해경본부, 지방해경본부, 해양경찰서)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 가-2. 상황파악 요령

- 가능한 6하원칙에 따르되 행정안전부(해경본부), 지방해양 수산청, 지자체,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가정보 입수

#### 가-3. 상황파악 요소

- 재난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인적·물적 피해, 오염 여부
- 시설물피해, 환경오염 여부, 부근 지역 및 해역 교통 장애 여부
- 해상·기상 상태 및 기타 요청에 필요한 사항

### (나) 긴급조치

#### 나-1. 긴급 수색·구조 활동 지원

- 협조요청기관 : 행정안전부(해경), 국방부(해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자치 단체 등과 함께 수색·구조 활동 및 인력·장비 지원

- 협조요청사항 : 가용차량, 선박 및 인력,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 진압용 특수 약제, 유처리제 및 유회수기 등

## 나-2. 안전조치 이행

- 행정안전부(해경)의 지휘에 따라 재난발생 인근지역 및 해역 차량이동, 운항선박 통제
- 항행안전방송 실시(지방해양경찰서안전본부 VTS센터 협조)
- 고조범람, 월과침수로 항행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해상부유물이나 해양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유류, 화학약품, 분뇨 등) 등 제거 명령 조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해사안전법(제2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배타적 경제수역법(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해당 장애물 소유자(점유자,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 운항자를 포함)에게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제거 명령

- 유류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시 소유자에 대한 방제명령(해양경찰청)

## (다) 비상소집

### 다-1. 비상소집

- 소집명령 : 사장(또는 운영본부장)의 명에 따라 총괄부장이 소집
- 소집대상 : 지역사고수습본부 “YGPA 대응반” 및 비상대책반 구성원

## (라) 위기경보 접수

### 라-1. 해양수산부로부터 위기 경보 접수

- 주요 위기 상황 및 우리 공사 해당사항 파악 등 보고(통보)

#### (마) 사고대응조직(사고수습본부) 설치

- 마-1. 비상대책반 가동
- 마-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바) 현장 수습활동

- 바-1.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 바-2. 인명구조 및 방제활동 협조·지원(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 바-3. 현장통제, 경계구역 선정 등 차량이동, 선박통행 제한 등
- 바-2. 유관기관에 대한 공조·협력 지원요청(필요시) 등

#### (사) 위기경보 해제 및 후속조치

- 사-1. 재난지역 복구 지원
- 사-2. 위기경보 해제 접수 및 전파
  - 지역사고수습본부 상황회의 결과에 따른 위기 경보 해제 상황 접수 및 전파
- 사-3.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필요시)

## 다.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p>지역사고 수습본부 (여수지방해양 수산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에 따른 지원·협조</li> <li>•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신속 보고·전파 및 공유체계 집중 강화</li> <li>• 재난 대응체계 가동, 유관기관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인력·장비 동원 협조 요청</li> <li>- 지방해양경찰청의 구조·방제작업 등 지원</li> <li>- 사상자 발생시 이송 등 지원</li> <li>- 피해자간 보상협의 지원</li> </ul> </li> <li>• 부표설치 및 인양·예인, 오염제거 등 사후처리 등 피해확산 방지 활동 및 선박운항 통제 강화 등</li> </ul>
<p>국립해양 조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면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조정보(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위험) 고도화 및 운영</li> </ul> </li> <li>• 이안류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안류 정보(4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위험) 고도화 및 운영</li> </ul> </li> <li>• 이상고파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li> <li>• 조수 포함 연안재해취약성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li> <li>• 긴급구조 및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해도 제공</li> <li>• 재난지역에서 긴급해양관측장비 설치 및 실시간 관측자료 제공(필요시)</li> <li>• 재난해역의 해양예보 정보 제공</li> <li>• 3차원 해저지형도 등 재난지역 수로측량 정보 제공(필요시)</li> <li>• 재난지역 항행경보 지속 발령 및 항행통보</li> </ul>



부 서	임무 및 역할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재난지역 건의 및 검토(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보고 및 전파, 통합 지원</li> <li>• 소관 피해 시설의 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원인 조사단 파견, 기록 및 DB관리</li> <li>- 정부 합동피해조사단 구성, 운영</li> </ul> </li> <li>• 긴급복구 추진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정조치,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li> </ul> </li> <li>• 피해현장 방문, 현장점검 및 피해주민 위로</li> <li>•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이재민 구호 조치</li> <li>• 이재민 응급 구호대책 강구</li> <li>• 재해구호기금 및 물자의 모금 및 분배</li> <li>• 재난방송의 요청</li> <li>• 대응상황 종합평가를 통한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li> <li>• 해상 수색·구조 및 사후처리</li> <li>• 피해자 보상주체와 방식에 대한 신속한 입장정리</li> <li>• 지역주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 검토</li> <li>• 민간 자원봉사자 지원</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장비 및 인명구조 지원</li> <li>• 필요시 피해 발생지역의 예비군 훈련 조정 등</li> <li>• 군 재난피해지역 대민지원간 현장지도(필요시)</li> </ul>
여수·광양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수피해 발생지역의 치안 유지</li> <li>• 인력·장비 등 피해복구 지원</li> </ul>
여수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기상정보(기상해일, 너울) 등 주관·유관기관 제공</li> </ul>
여수시 광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을 통한 복구 작업 수행</li> <li>• 긴급 지원체계 가동</li> <li>• 피해사항 파악 및 긴급물자 지원</li> <li>• 소관 분야 피해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li> <li>• 재난취약 지역 등 피해 예상 시설물 피해사항 파악 및 위험지역 출입통제</li> <li>• 시·도는 현장조치 매뉴얼, 해안인근 시·군·구는 해안긴급 방제실행계획을 각각 수정·보완</li> <li>• 생태계 복원 등 피해복구대책 실행</li> </ul>
여수광양 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선박 선석 배정 등 사고 상황 고려 항만 운영</li> <li>• 수습 및 복구 지원</li> </ul>

## V. 기관대응수칙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유형: 조수재난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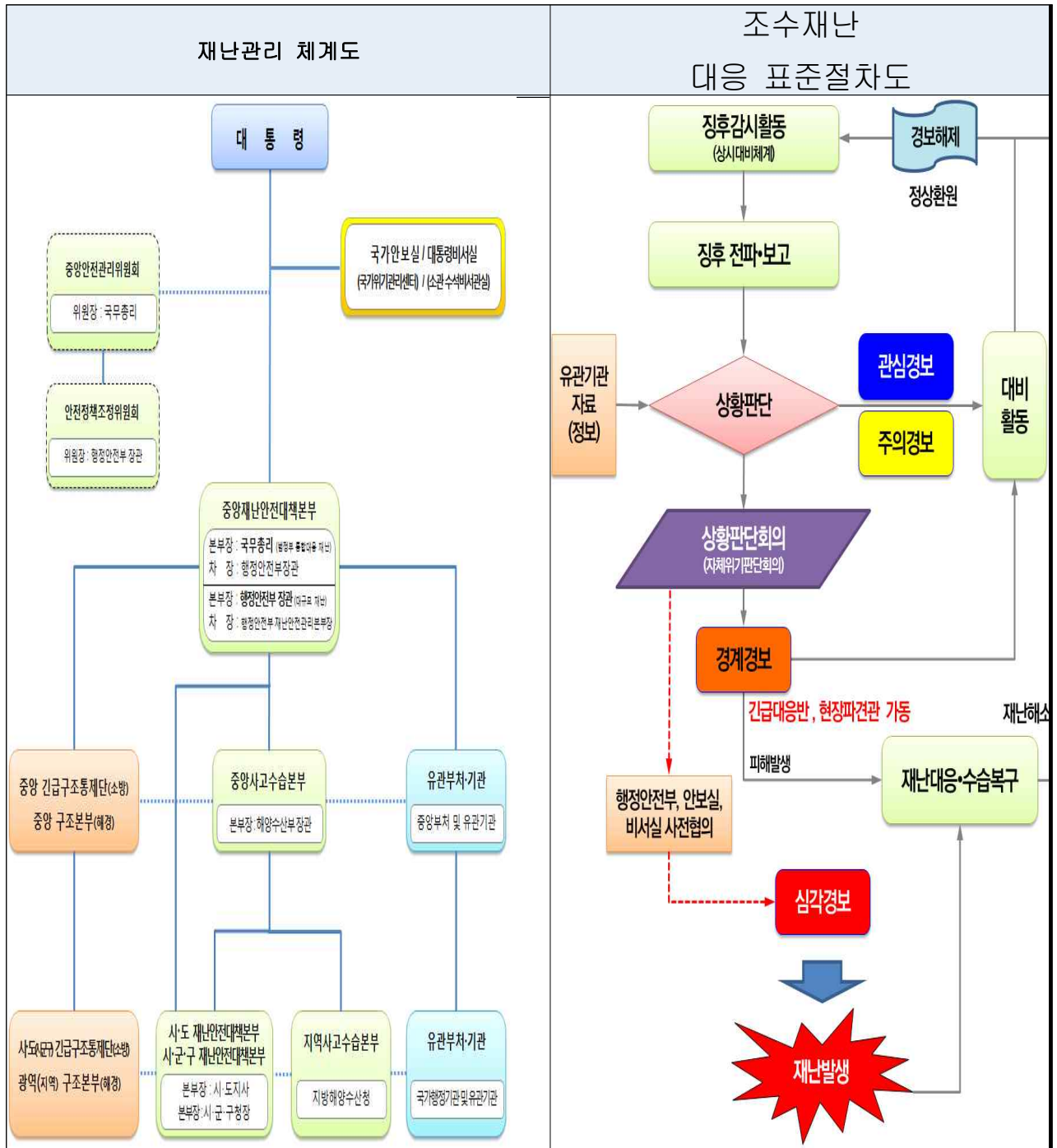
관리번호 : 4

관련 매뉴얼

○ 「조수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해양수산부

○ 「조수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해양수산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소방청

# I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II 여수광양항만공사 조수 재난 대응 프로세스

구분	재난발생 단계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초동대응 단계	비상대책반 운영	수습복구 단계
초기 대응 부서	24시간근무실 <b>상황접수</b> •초기상황 파악 및 판단 - 위기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b>상황전파 및 보고</b> •대응소관부서 전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경 등 유관기관 전파 •필수요원 비상소집	•추가피해(인·물적) 및 현장대응상황(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경, 해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파악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내부 보고체계 유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해경의 상황보고서 접수 및 전파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현장 및 중대본·지대본 상황보고서 전파 - 현장 방제작업 지원 요청 - 주기적인 상황 보고 전파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현장 및 중대본·지대본 상황보고서 전파
	대응소관부서 •부서장·실무자 정위치 •초기상황파악 및 보고 - 사고현황 및 사고대응 현황 파악 - 사고해역 주변 현황 파악 - 사고정보 파악	•초기정보 입수, 추가상황 파악 내부보고 및 전파 - 피해규모 및 대응상황 등 파악, 관계기관에 전파(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경, 지자체 등) •인력 및 장비 지원 사항 파악 •상황판단회의 주관 •(필요시) 관계기관에 인력·장비 출동요청	•재난안전대책지원본부 근무자 발령 요청, 반별 편성 •재난안전대책지원본부 운영(본부장 : 사장) - 중대본·지대본 지원·협조체계 구축 - 인력, 장비, 물자 등 부족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시) 지역사고수습본부에 인력 파견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고지역 피해 현황 조사 •사고지역 복구
사장 · 부사장	<b>초기상황 확인</b> •초기상황 확인 및 초동대응 지휘  <b>조치사항 지시</b> •(필요시) 긴급조치 지시	<b>초기대응 점검 및 조치사항</b> •사고 상황 진단 및 대처상황 점검 - 피해현황, 현장조치사항, 대응태세 확인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필요성 판단 •기관장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b>비상대책반 지휘</b>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 비상대책반 운영방식 검토 - 비상대책반 종합상황실 점검, 대책지시 -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원 지시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지시 •복구 및 안전조치 이행 특별지시 •(필요시) 현장방문 및 피해상황 확인	•비상대책반 해체 결정 •(필요시) 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피해보상 관련 업무분장 및 역할 조정 •유관기관 사고수습 협력 •재난복구 협력 총괄 - 재난합동조사단 협력(소속직원 연락관 파견)
담당부서 실·부장	•초기상황 확인 및 초동대응 지휘 •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2차 피해 가능성 판단 및 보고(사장/본부장) •상황기록유지 및 보고	•위기경보 발령단계 결정 •해양수산청, 해경 및 지자체 대처상황 점검 및 필요사항 검토·지원 •관계기관(해양수산청, 해경, 해군, 지자체 등) 핫라인 유지	•사장·본부장 보좌, 비상대책반 운영 - 비상대책반 상황회의 주관 - 실무반별 역할 분담 및 조치사항 점검 - 중대본·지대본 대처상황 점검 지원 필요사항 검토·지원 •비상대책에 관한 관계부서 협의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피해복구 자원 등 파악·지원
대변인 (홍보팀)	•상황보고 확인 - 언론 모니터링 등 보도내용 확인 - 내부보고자료 수신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준비 •현장 대변인과 핫라인 유지 - 현장 대변인 :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지명	•위기관리 홍보대책반 구성(기획조정실) •상황보고 확인 지대본 및 지수본 관련 언론대처정책 설정 지원 - TV, 인터넷 등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부정확·미확인 보도(오보 및 유언비어 등) 대처 •보도자료 작성	•단계별 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사고대응수습활동 홍보(국민불안 해소) •사장 브리핑 및 인터뷰 준비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 Ⅲ 여수광양항만공사 조수 재난 주요 협업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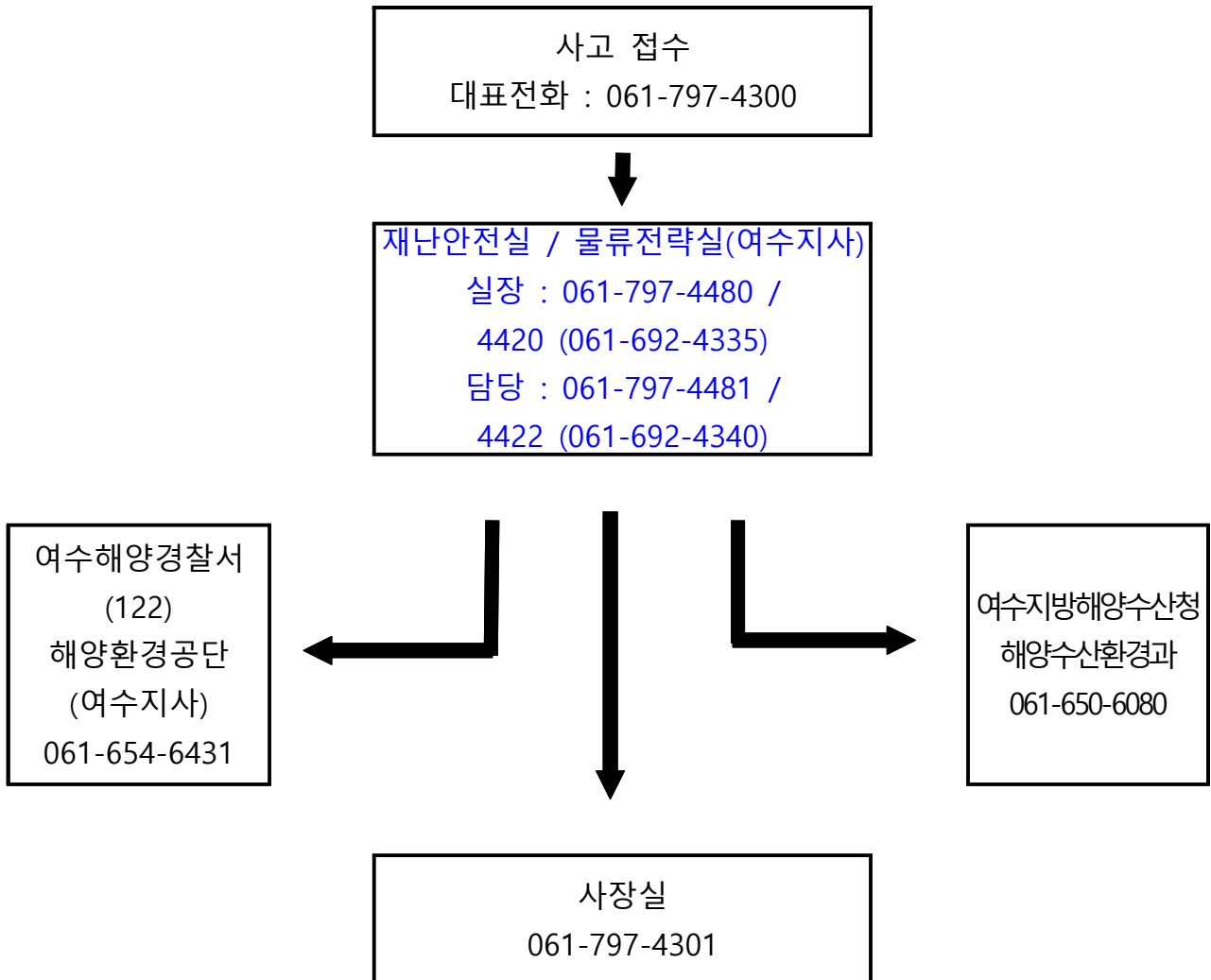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재난현장 환경정비	③ 재난자원 지원	④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주관부서	재난안전실(총괄통제부)		물류전략실, 여수지사 (운영대책부)	뉴딜사업실, 항만개발부, 항만시설부 (복구대책부)	물류전략실(운영대책부) 경영지원부(지원부)
연계부처	해양경찰청, 해군, 지자체 등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경찰청, 해군, 지자체 등	지자체 등
주요 업무	<p>&lt;평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TV, CCTV 등 언론매체 활용 실시간 재난 상황모니터링</li> <li>재난 상황 전파·보고(BH, 총리실, 장·차관)</li> <li>상황전파, System조작 등 상황관리 훈련</li> <li>중앙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 점검</li> </ul>	<p>&lt;재난발생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위기평가회의 소집, 결과보고 및 위기경보 발령</li> <li>비상대책반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근무 발령(상황관리 등 필요 협업가능 근무자)</li> <li>- 상황보고서 작성 총괄 및 내·외부 보고</li> </ul> </li> <li>재난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확인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총원·조달방안 마련(자원봉사자 대민지원 포함)</li> </ul>	<p>&lt;재난현장 방제현장 현황파악 및 예찰활동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제현장 및 인력 관리</li> <li>방제장비 현황파악 등 지원계획 수립</li> <li>해양오염 예찰활동 및 지원</li> </ul>	<p>&lt;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협조요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오염방제 현장 지원대책 수립</li> <li>지자체 및 일부행정기관 해안방제시 인력·기술·물자 등 지원요청</li> <li>현장 상황실 운영 지원(마케팅부)</li> </ul>	<p>&lt;재난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전염병 방역서비스 지원 협조요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지원(행정지원반)</li> <li>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해 재난대응을 위한 부두 방역 지원(현장대응반)</li> </ul>
기능	⑤ 자원봉사관리	⑥ 사회질서유지	⑦ 수색,구조·구급	⑧ 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	경영지원부(지원부)	물류단지부, 여수지사 (운영대책부)	물류전략실(운영대책부)	기획조정실(지원부)	
연계부처	지자체 등	지자체 등	해양경찰청, 해군, 지자체 등	지자체 등	
주요 업무	<p>&lt;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협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와 연계하여 재난지역 자원봉사관리 지원</li> </ul>	<p>&lt;교통통제,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요청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명구조 및 사고해역 인근 주민긴급대피 지원 요청(총괄반)</li> <li>사상자 신원 파악(항로표지반)</li> <li>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 예방 활동 요청(총괄반)</li> <li>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요청(총괄반)</li> </ul>	<p>&lt;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경찰청, 해군, 지자체 등에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요청 (인력·장비, 수색·구조 등)</li> <li>인명구조 활동지원(월드마린호)</li> <li>방제 활동지원(월드마린호)</li> </ul>	<p>&lt;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li> <li>언론기관 업무협조(브리핑·인터뷰 등)</li> <li>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li> <li>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중대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li> <li>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해양경찰청 과 공동대응)</li> </ul>	

## IV 조수 재난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부처	관심 주의 사전대비	경계 초동조치	심각 중수본·중대본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관기관 공조.협력체계 구축.확인</li> <li>지속적 위기징후 감시</li> <li>위기상황 접수 및 전파 점검</li> <li>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적 위기징후 감시</li> <li>위기상황 접수 및 전파</li> <li>유관기관 공조.협력체계 구축 및 가동</li> <li>취약지역 긴급 점검 지시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li> <li>항내 정박 중인 선박 및 운항중인 선박 대피지시</li> <li>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 본부 설치(필요시)</li> <li>긴급대응반, 현장파견관 가동(필요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li> <li>복구진행사항 및 피해배.보상 절차 언론대응 및 홍보 총괄</li> <li>피해조사 및 기록 관리</li> <li>어항시설, 항만시설의 응급복구의 추진</li> <li>침몰선박 인양 등 피해선박 응급 복구</li> <li>해양쓰레기 처리,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대책 수립.시행 (해안,해양,해저지역)</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주관기관 및 재난현장과 연계한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li> <li>지휘.통신망 및 피해사례 파악</li> <li>상황관리체계 확립 및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점검</li> <li>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li> <li>소방력 동원 대응태세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주관기관 및 재난현장과 연계한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li> <li>지휘.통신망 및 피해사례 파악</li> <li>해상 취약지역 순찰강화</li> <li>상황관리체계 확립 및 긴급대응체계 구축 및 가동</li> <li>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가동</li> <li>소방력 동원 대응태세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검토</li> <li>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li> <li>대응상황 종합평가를 통한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li> <li>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조사.평가(필요시)</li> <li>해상 수색.구조 및 사후처리</li> <li>피해 발생지역의 해상치안 유지</li> <li>인력.장비 등 피해복구 지원</li> </ul>
여수광양항만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내 사고 취약시설 등 정비.점검</li> <li>사고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선박 선석 배정 등 사고상황 고려, 항만 운영</li> <li>사고수습 및 복구 인력.장비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선박 선석 배정 등 사고상황 고려, 항만 운영</li> <li>사고수습 및 복구</li> </ul>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동원체계 구축 및 인명구조 긴급지원태세 유지</li> <li>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 인력.장비 지원 준비 및 인명구조 지원</li> <li>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장비 및 인명구조 지원</li> <li>필요시 피해발생지역의 예비군 훈련 조정</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도로 침수피해 대비 점검 및 대처계획 수립</li> <li>산업단지 등 침수, 범람 피해 대비 점검 및 대처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도로 침수피해 대비 점검 및 비상근무 실시</li> <li>산업단지 등 침수, 범람 피해 대비 점검 및 대응태세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도로 침수피해 응급복구 지원</li> <li>산업단지 등 침수, 범람 피해 응급복구 지원</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수습 및 복구 예산 지원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수습 및 복구 예산 지원 계획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수습 및 복구 예산 지원</li> </ul>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 침수 및 염해 피해 대비 점검 및 대처계획 수립</li> <li>농경지 유실.매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침수 및 파손 대비 점검 및 대처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 침수 및 염해 피해 대비 점검 및 비상근무 실시</li> <li>농경지 유실.매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침수 및 파손 대비 점검 및 대응태세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 침수 및 염해 피해 복구 지원</li> <li>농경지 유실.매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침수 및 파손 복구 지원</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의료지원 대책 수립</li> <li>재난지역 방역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가동 및 지원</li> <li>재난지역 방역대책 활동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구축 및 활용</li> <li>재난지역 방역대책 추진</li> </ul>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 검토</li> <li>민간 자원봉사자 지원 및 국민성금 검토(필요시)</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시 먹는 물 공급대책 등 급수계획 수립</li> <li>재난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시 먹는 물 공급대책 및 상하수도 시설 응급 복구</li> <li>재난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대책 점검 및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레기 처리 및 비상급수 대책 시행</li> <li>재난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li> </ul>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기상정보(기상해일, 너울)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기상정보(기상해일, 너울)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기상정보(기상해일, 너울)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태세 유지</li> <li>재난피해발생지역 질서 및 치안유지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li> <li>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수 피해 발생지역의 치안유지</li> <li>인력.장비 등 피해 수습.복구 지원</li> </ul>
국립해양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조정보(4단계), 이안류 정보(4단계)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조정보(4단계), 이안류 정보(4단계)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조정보(4단계), 이안류 정보(4단계) 종합상황실 제공 및 유관기관 전파</li> </ul>

## V 비상연락망

### 가. 여수광양항만공사 조수 재난 긴급보고 및 비상연락체계도



※ 각 팀 대표전화(061-797- )

재난안전실	물류전략실	항만개발부	항만시설부	여수지사	경영지원부
4480	4420	4520	4530	692-4335	4340



## 나. 조수 재난 사고 보고·전파처

관련 기관	담당 부서	전화 번호
B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비서관실</li> <li>○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센터</li> </ul>	02-770-2890 02-770-4380~5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환경정책관실 환경정책과 안전정책과 안전관리과</li> </ul>	044-200-2363 044-200-2344 044-200-2349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안전상황실</li> <li>○ 자연재난대응과</li> </ul>	044-205-1500 044-205-5237, 5232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li> <li>○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정책과</li> </ul>	044-201-7314 044-201-6751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환경정책과</li> <li>○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종합상황실</li> <li>○ 어촌양식정책과</li> </ul>	044-201-4419 044-200-5858, 5853 044-200-5895~97 044-200-5616~7
해양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색구조과</li> <li>○ 경비과</li> <li>○ 해양안전과</li> <li>○ 종합상황실</li> </ul>	032-835-2445 032-835-2141 032-835-2148 032-835-2142

## 다. 조수재난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 여수광양항만공사(대표 전화 : 061-797-4300)

해당분야	부서명		연락처	
			전화	FAX
재난 총괄	주간	재난안전실	061-797-4482	061-797-4494
	야간 (공휴일)	당직자	061-797-4300	061-797-4502

○ 유관부처 및 기관

기관명	구 분	전 화	팩 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7, 5232	044-205-8966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044-200-5895~6	044-200-588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088	061-654-2456
여수해양경찰청	상황실	061-840-2242	061-840-2942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061-654-6434	061-654-6430
전남소방본부	상황실	061-286-0900	061-286-0910
광양소방서	상황실	061-798-0900	061-798-0910
여수소방서	상황실	061-680-0900	061-680-09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 운항관리센터	061-662-9713, 9715, 9717, 9718, 9720	061-662-9719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	070-8799-7800	070-8799-7819
여수항도선사회	상황실	061-660-1388	061-666-0202

○ 지방자치단체

구 분	부 서 명	전 화	FAX
전라남도청	해양항만과	061-286-6832	061-286-4795
광양시	재난종합상황실	061-797-4949	061-797-2119
여수시	재난안전과	061-659-3233	061-659-5893

## VI. 부록

## 1. 최근 10년간 주요 조수피해 사례

날짜	위치	피해상황
2012년 8월	목포 일대	태풍 덴빈과 만조시간 겹쳐 목포시 일대가 침수됨
2012년 9월	사천시 서동 유람선길 통영 강구안 일대 창원시 합포구 용원동 여수시 연등천	태풍 산바가 만조시간과 겹쳐 해안가 지역에 침수 피해
2013년 8월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해안 도로부는 만조시 침수현상이 발생
2014년 8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통영시 서호동, 중앙동 등	만조시간대에 바닷물이 역류, 도로 곳곳 침수 피해
2014년 9월	인천 중구 무의도 무안 톱머리 해수욕장	만조 때 바닷물에 잠김
2014년 10월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만조시간대에 오천면 소성리 저지대 침수 피해
2014년 10월	신안 흑산도	만조시간대 흑산항 일대 도로 침수
2016년 10월	여수시 남면	해안로도 일부 침수
2016년 11월	목포 동명동사거리 등	만조시간대 저지대 해수면 침수 피해
2018년 7월	인천 소래포구	만조 때 수협, 소래포구 침수 피해
2018년 8월	인천 선진포항, 군산 내항, 대청도(선진포항), 보령 남당항, 완도항, 완도 회진항, 제주 이호동	만조 때 침수 피해
2019년 8~9월	임자도 해경파출소 전면, 하의도 응곡·봉도선착장, 흑산도 고래공원 전면	만조 때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2020년 8월	성산 천진항, 오조포구, 신산포구	만조 때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2021년 5월	인천 소래포구, 보령 오천항, 장항항, 군산항, 영광 법성포, 진도 어촌체험마을, 마산 위판장,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성산포	만조 때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신안 흑산도 일부 바닷가



인천 중구 무의도 일대 도로 침수



참원 만조시 범람



참원시 진해구 움동2동



통영시 서호동, 정량동, 항남동, 중앙동 등 저지대

## 2.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 〈 기본 방향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문자 전송시스템(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로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 요청

### □ 표준문안 예시

명 칭	표 준 문 안	
태풍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00시 00지역 태풍 경보. 태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하천, 해안가 등 위험 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00시 00지역 태풍경보.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호우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00시 00지역 호우경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가족,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00시 00지역 호우경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홍수 주의보	4G폰	[00홍수통제소] 오늘 00:00 00강 00시(00교)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방송 등을 통해 홍수상황을 확인하시고,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G폰	[00홍수통제소] 오늘 00:00 00강 00시(00교)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	4G폰	[00홍수통제소] 오늘 00:00 00강 00시(00교)지점 홍수경보 발령. 저지대 침수 및 하천범람 등의 우려가 있으니 피해에 대비 바랍니다.
	2G폰	[00홍수통제소] 오늘 00:00 00강 00시(00교)지점 홍수경보 발령.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대비 바랍니다.
대설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00시 00지역 대설경보 발표. 지붕 및 집 앞 눈 치우기, 야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차량 체인 구비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00시 00지역 대설경보. 대중교통 이용, 내 집 앞 눈 치우기, 눈길 미끄럼 주의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 1 재난문자방송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6항,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 □ 개요

- (목적) 휴대폰 사용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20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및 일부 4G(~'12년 출시) 휴대폰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 시 최대 60자(2G) / 90자(4G)
- (송출단위) 전국 / 시·도 / 시군구
- (송출채널) 재난유형에 따라 채널 설정

채널명칭	재난유형	단말 알림소리	수신거부
위급재난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60dB이상	불가
긴급재난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40dB이상	가능
안전안내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	일반문자 설정값	가능

## ○ (송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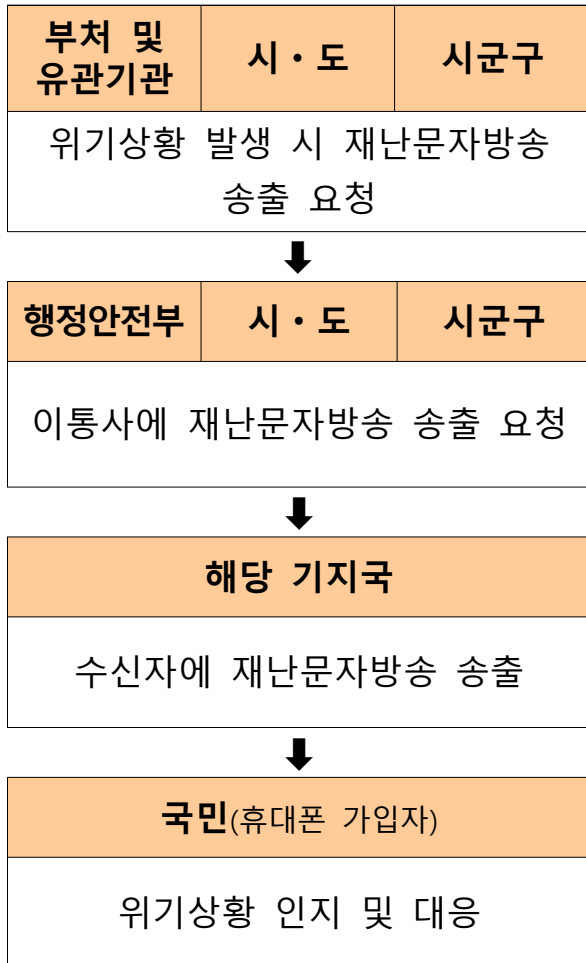


## □ 주요기능

-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실시간 동시에 전달
- 이동 중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수신



## □ 발송절차



- 사용기관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활용 재난문자방송 송출 요청
- 각 승인권자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 시·군·구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대량전달  
- 1회 최대 2G 60자, 4G 90자
-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으로 재난정보 수신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외부망 공통) : <https://www.ndms.go.kr>

※ 요청경로 : GIS상황관리 → 상황관리 → 통합발령 → 대국민 통합 상황전파(실제)



## □ 표준문안 예시

조수재난	<p>&lt;조수재난 발생 시&gt;</p> <p>○ 조수재난 발생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해안) 고조범람 발생,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p> <p>○ 조수재난 대피 권고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해안) 고조범람 확산 우려,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은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p> <p>○ 조수재난 대피 명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경 ○○(시군구), ○○(읍면동) (○○해안) 고조범람 확산, 주민과 관광객들은 즉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바랍니다.</p> <p>&lt;조수재난 발생 위험 상승 시&gt;</p> <p>○ 고조범람 위험예보 발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 ○○(시군구), 고조범람 위험예보 발령, 고조범람 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관광객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p> <p>○ 고조범람 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발령 시 [사용기관명] 오늘 ○○시부로 ○○(시도)지역, 고조범람 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 발령, 고조범람 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관광객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p>
------	---

## 2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 **관련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 □ 개요

- (목적)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TV 및 라디오 시청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전달
-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기상청(지진)
  - ※ 재난발생 시 통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난방송을 방통위·과기부로 송출 요청
- (통보기관) 재난관리책임·주관기관 등
- (재난방송사 현황) 총 161개 방송사(소관 : 방통위 66개, 과기부 96개)\*  
(2020. 12월 기준, 재난방송 등 표준 매뉴얼)

방송사업자	계	지상파	DMB	종편PP	보도PP	SO	IPTV	위성
사업자 수	161	43	17	4	2	91	3	1

\* (방통위) 지상파·DMB, 종편·보도PP / (과기부) 유선(SO), IPTV, 위성방송(sky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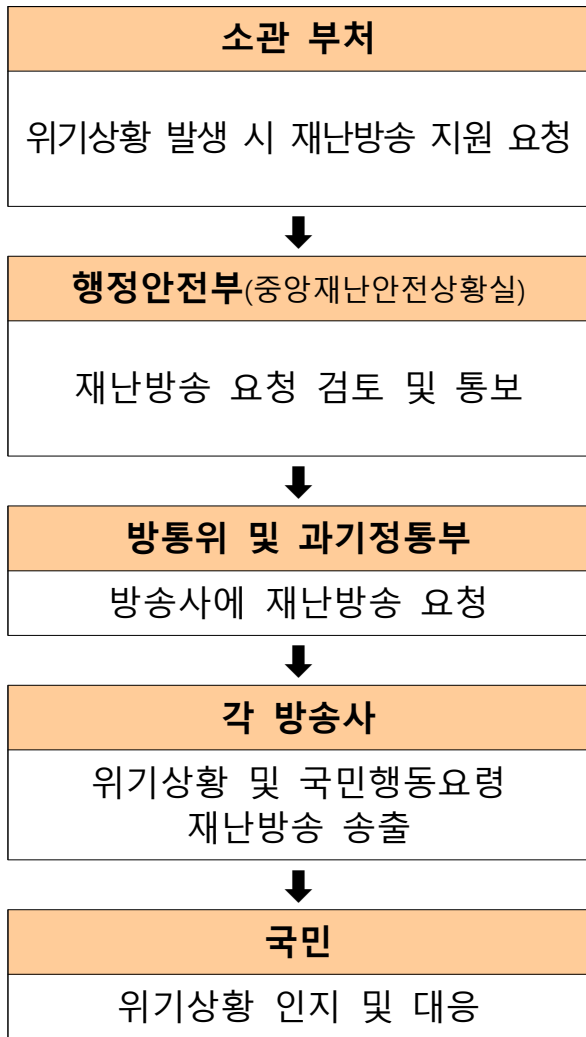
## ○ (시스템 체계)



##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통위 또는 과기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전파
- 전국 또는 해당 지역 방송사에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 □ 발송절차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 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에 재난방송 요청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EDBS) 활용
  -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재난방송으로 신속하게 송출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외부망 공통) : <https://www.ndms.go.kr>

※ 요청경로 : GIS상황관리 → 상황관리 → 상황보고전파관리 → 상황전파메시지작성



### 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

#### □ 개요

- (목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간 재난 상황을 실시간 전파 및 공유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지원
  - ※ 상황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 (사용기관 및 사용자 현황) 총 445개 기관 14,879명 사용 중

(2021. 6. 20. 기준)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기관수	455	25	245	17	168
사용자수	15,022	1,323	11,566	1,027	1,106

#### ○ (시스템 개념도)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외부망 공통) : <https://www.ndms.go.kr>

#### □ 주요기능

- 상황전파 메시지를 이용한 기관 간 상황전파 및 상황보고
- 기관 연계를 통한 재난정보 수집 및 실시간 자동 상황전파
-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대국민 상황전파(CBS, DMB) 통합발령

### 3. 영상회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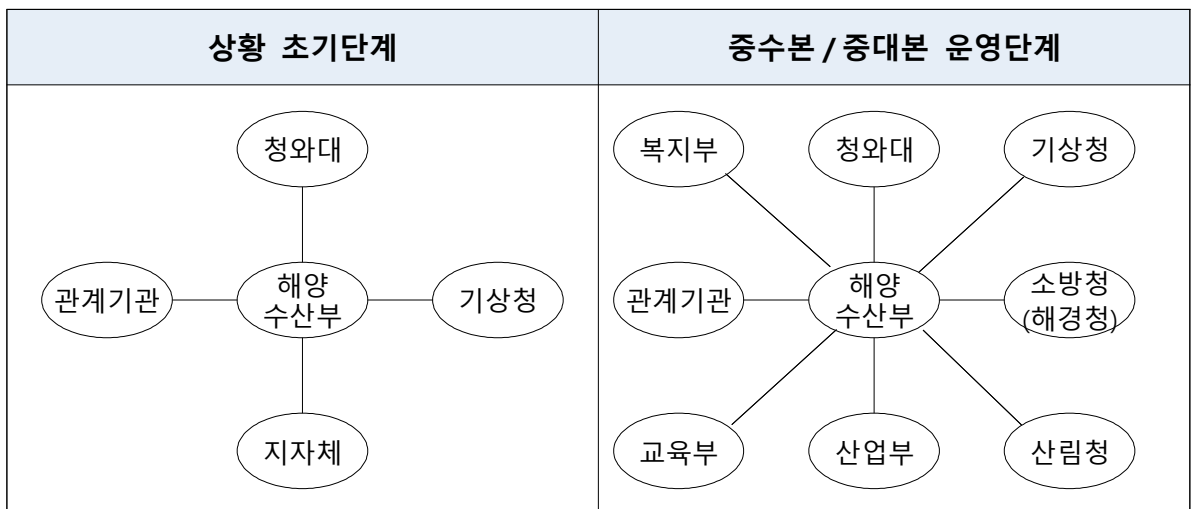
#### □ 개 요

- (목적) 청와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앙부처, 긴급구조기관 (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18부</li> <li>•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li> </ul>
지자체 (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li> <li>*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li> </ul>
재난관리 책임기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청</li> </ul>

#### □ 영상회의 운영

- (대상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중앙수습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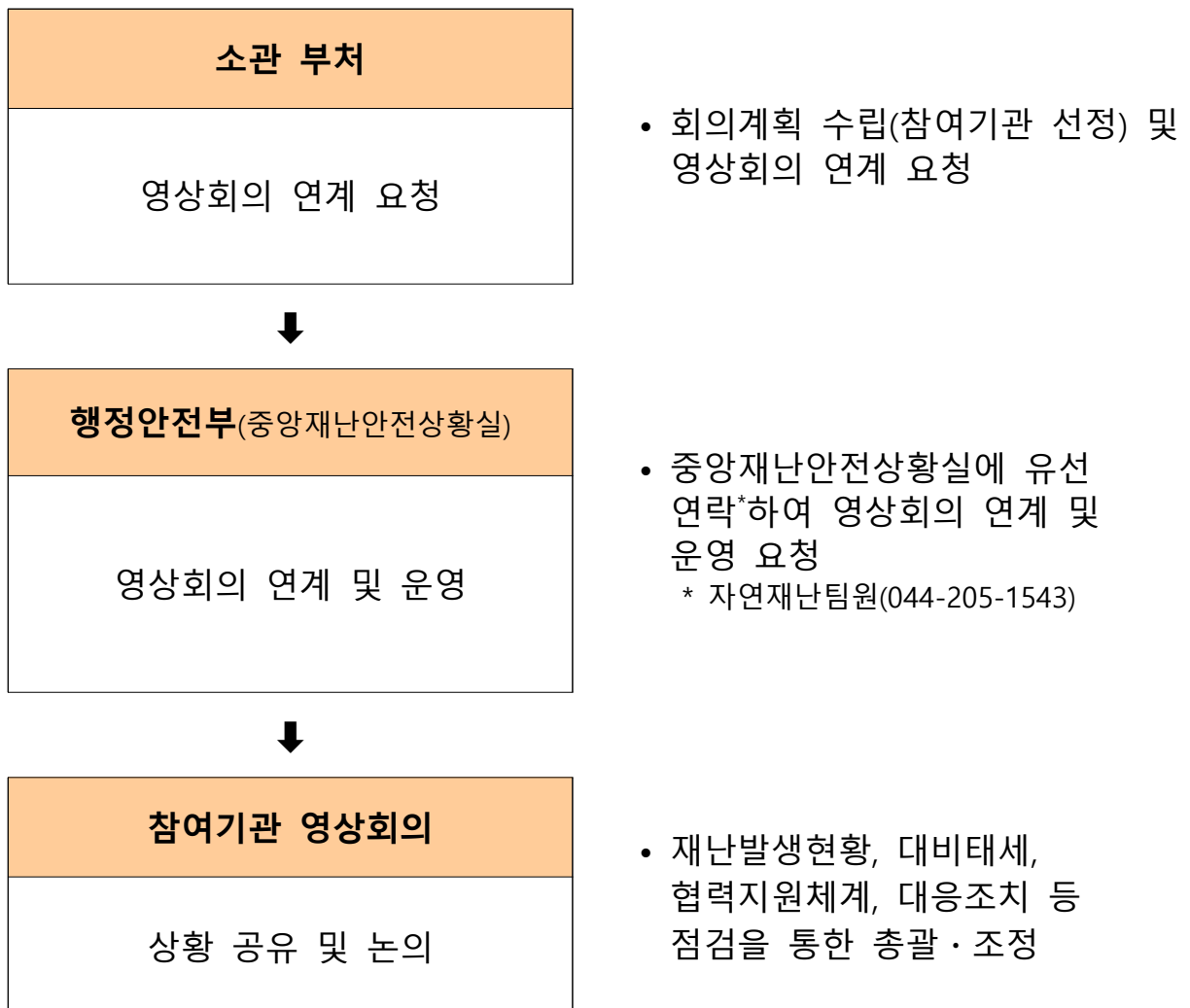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석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예 :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재난 대비 등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세력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 운영 절차



## 4.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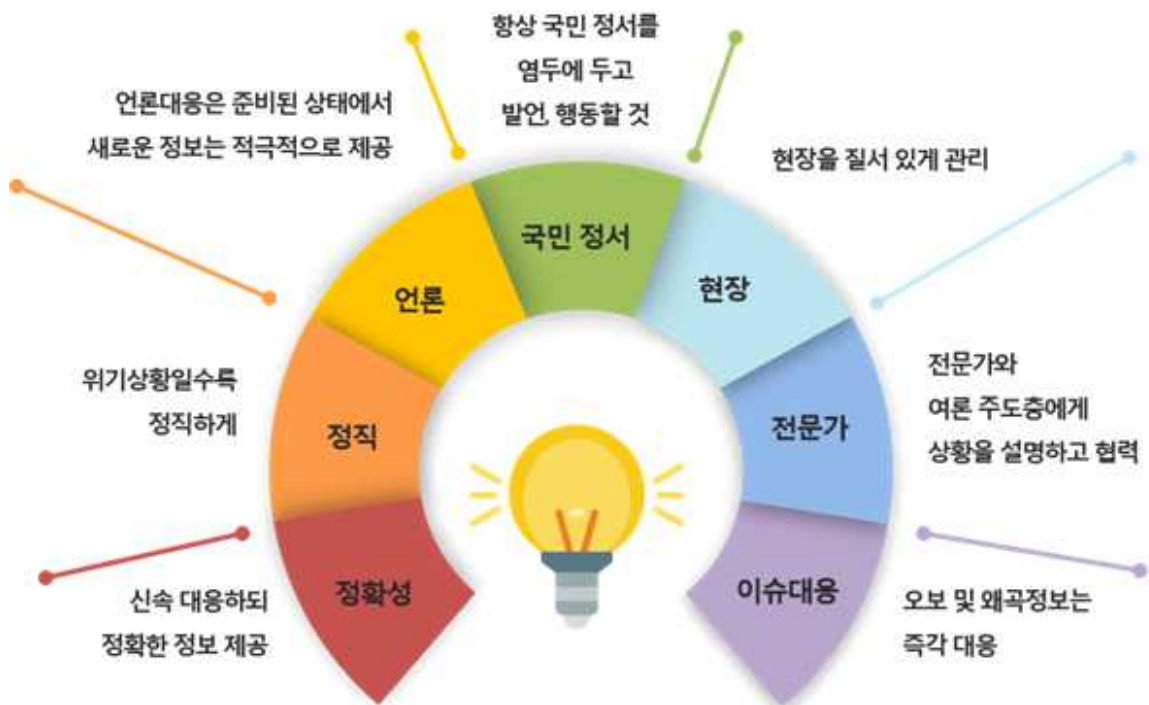
### I. 일반사항

#### 1. 목적

- 이 매뉴얼은 정부가 위기<sup>1)</sup> 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빠른 복구와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됨

#### 2. 기본 원칙

- 위기관리 소통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래의 7가지 대응원칙을 준수해 위기 인지 단계부터 복구, 회복에 이르기까지 상호배려와 지지, 사회적·정책적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위기'는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이 수록된 매뉴얼의 '재난'을 의미(예: 풍수해, 감염병 등)

### 3. 위기관리 소통 체계

#### 3-1.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정하되, 설치되는 조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① 본부장이 총리인 경우(「재난안전법」 제14조제4항) 총리가 지정하는 장관 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② 본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인 경우(「재난안전법」 제14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본부장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재난안전법」 제15조의2)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 **(현장)**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공무원

※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1~3위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음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기관(또는 본부)의 유일한 공식 소통 창구로서, 위기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을 장악하며 시의 적절한 홍보를 시행해야 함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공식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위기의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발표해야 함
- \* (중대본·중수본)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 (방대본·현장)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위기관리 소통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과 실무자를 지정할 수 있음



### 3-2.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

- 상위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는 소통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가 지정하는 별도의 조직이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이 됨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3호 '재난 수습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포함함

-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대변인실 등 평상시 소통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이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이 됨

### 4. 위기관리 소통 업무

- 위기관리 소통 업무는 ▲여론 분석, ▲전략 기획, ▲소통 실행으로 구성되며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II. 업무별 세부 내용에서 후술함

여론 분석	전략 기획	소통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론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 분석</li> <li>- 온라인 여론 분석</li> </ul> </li> <li>◆ 허위·조작정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확인 정보 감지 및 확인</li> <li>- 허위·조작정보 대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시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상황별 메시지</li> </ul> </li> <li>◆ 매체별 소통전략</li> <li>◆ 근거자료 확보</li> <li>◆ 협업 관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자/전문가/이해관계자/영향력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정보 제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브리핑 추진</li> <li>- 보도자료 배포</li> <li>- 공식 누리집/상담창구 마련</li> </ul> </li> <li>◆ 언론 지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지원체계 구축</li> <li>- 국내/해외 언론 지원</li> </ul> </li> <li>◆ 가용매체 활용하기</li> <li>◆ 민간과 협업하기</li> </ul>

## II. 업무별 세부 내용

### 1. 여론 분석

#### 1-1. 여론 상황 분석

##### □ 언론보도 분석

- (필요성) 위기 자체의 대응과 수습뿐 아니라, 대국민 소통계획 수립에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줌
- (기본방향) 여론 분석 전담자를 지정, 다음 사항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
  - 주요 신문(중앙일간지, 경제지 등)과 방송(지상파, 종편 등), 통신, 외신의 ▲논조, ▲제언, ▲비판을 주제별로 정리
  - 정리 주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매일, 격일, 매주 등 정해진 시간(예: 오전 10시, 오후 5시)에 하는 것이 좋음
  - 정부의 공식 브리핑은 실시간으로 면밀히 점검, 여론 반응과 함께 발표자의 태도나 표정 등 개선사항도 전달

##### □ 온라인 여론 분석

- (필요성)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언론보도와 달리,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살펴보기 좋으며, 실시간 반응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 (기본방향) 온라인 분석 전담자를 지정, 다음 사항을 주기적(매일/기타)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
  - 주요 포털·커뮤니티 등 주요 온라인 게시글의 내용, 전반적 분위기, 제언, 우려점 등을 유형화하여 정리. 가급적 유형별로 현재 우세한 여론을 표시하는 것이 좋음
- \* 정책여론 수렴시스템(big.pr.go.kr) 활용 가능

- 정리 주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온라인 여론은

수시로 급변하는 만큼, 주목도가 높은 시기에는 1일보다 짧은 단위 (예: 일 2회, 일 3회 등)로 분석하는 것을 권장함

**[참고]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또는 정책고객,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분석도 병행**

## 1-2. 허위·조작정보 대응

### ※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기본 원칙

- (신속대응) 오보는 또 다른 오보를 부르고, 유연비어는 교차 인용되며 급속히 확산되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적극대응)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면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보를 예방할 수 있음. 오보 대응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 오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사실적 주장 → 반론청구권 / 명백한 오보 →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

### □ 미확인 정보 감지 및 확인

- 여론 상황 분석 과정에서,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는 별도로 분류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진위여부 파악
- \* 뉴스보도, 인터넷 게시글, 누리소통망(SNS) 소문 등
- 확인 결과, 단순 오보(misinformation)는 보도설명, 정정요청 수준으로 대응

### □ 허위·조작정보 대응

-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의도적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틀린’ 정보로, 쟁점의 특성\*과 대응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의 수준과 방법 결정
- \* 위법성이 명백한가, 내용이 복잡한가 등
- \*\* 해명의 공신력(어느 기관에서 해명하는가), 속도(언제 해명하는가) 등

-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 수사 의뢰, 공식 브리핑을 통한 정정, 후속 콘텐츠 제작 등으로 대응하며, 하나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여러 대응 수단을 병행할 수도 있음

## □ 대응 시 유의사항

### ① 언론의 경우

- 공식 대응 전,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먼저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 필요
- 통계 및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중하되 당당하게 대응
  - \* 면피용, 책임 회피용 해명자료는 없는 것보다 못함
- 해명자료는 다른 언론 매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배포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② 온라인의 경우

-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는 확산속도가 빠르고 정정이 어려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도·설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주로 언론에서 참고) 온라인에도 콘텐츠 게시(주로 국민들이 참고)
  - 설명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 차트, 도표, 그래픽 등 가시성이 높은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관계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 연성 콘텐츠도 적극 활용하면 좋음
  - \* 설명자료의 형식이나 표현은 각 온라인 매체의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변형할 수 있음

## 2. 전략 기획

### 2-1. 메시지 관리

#### □ 핵심 메시지의 선정 [참고1]

- 국민과 언론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선정
- 짧고 간단한,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야기 (스토리텔링)가 담겨 있으면 더욱 좋음
  - \* 복문, 중문보다는 단문이 효과적이며,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 좋음
- 핵심 메시지의 부각을 위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좋음

#### [참고] 메시지 개발 순서

① 핵심 단어를 먼저 선정 → ② 핵심 단어 또는 동의어를 이용해 1개의 문장 또는 문구 구성 → ③ 다른 사람(정책 대상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에서 홍보 메시지 생각 → ④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핵심적인 메시지를 3개 이상 개발 → ⑤ 개발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 선택

#### □ 상황별 메시지 구성

- (핵심 메시지) 소통 기조와 핵심 메시지가 결정되면 모든 홍보물과 홍보 활동에 반영되도록 정부 내·외부에 널리 공유(필요 시 공문, 전화 연결음, 청사 옥외 현수막 등에도 활용)
- (정부 대응상황 안내)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내역과 향후 계획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안내
  - 다만, 사생활 보호 침해 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대책은 근거 법령이나 선례 등을 함께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이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국민 행동수칙) 위기상황이 끝나지 않아 국민의 지속적인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국민 행동수칙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전방위적으로 확산

- 행동수칙은 핵심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전 국민의 숙지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온·오프라인상의 모든 가용 매체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확산

## 2-2. 매체별 소통전략

- (텔레비전·라디오·신문 등 언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위기의 진행 및 수습상황, 정부 대책 및 향후 계획, 주의할 점을 알려야 하거나 과도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활용
    - 언론 대담이나 시사기획, 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누리집·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오보·허위조작정보의 정정, 긴급 공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벤트 등이 필요한 경우 활용
  - (현수막·인쇄물 등 홍보물) 국민 행동수칙, 상황별 핵심 메시지, 슬로건, 치유와 공감의 표현 등의 반복적 노출이 필요한 경우 활용
- ※ 광고는 정부 대책이나 대응방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압축적이고 인상 깊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사회적인 인식 또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캠페인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좋음

## 2-3. 근거자료 확보

- 대국민 소통에 도움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 소관 핵심자료를 취합하고 적극 활용
  - ▲과거 유사 사건·사고 자료, ▲기초 통계, ▲부처의 장·단기 계획, ▲감사자료 등 조직 및 정책 전반의 자료 사전 준비
- 필요한 경우,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국민 소통 활동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2-4. 협업 관계망 구축

### □ 관계자

- (기관 간 협의체) 정부 내의 통일된 입장(One Voice)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조 체계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
- \* (주의) 범정부 지휘 본부의 역할이 약해지면 각 부처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사안'을 공개하거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방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현장지휘소]—[중대본]—[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고 홍보 협력체계 구성
-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항은 협의회나 상시 연락망을 통해 정부 입장을 미리 정리한 뒤 발표. 기관별로 보유한 홍보 매체는 공동 활용하고, 주요 위기관리 대책은 함께 홍보
- \* (예) 감염병 확산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예방수칙 공동 홍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는 위기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상시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소통 능력 향상 적극 지원

### □ 전문가

- (여론 형성의 주도자) 전문가는 위기 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하여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 주요 전문가 등 여론 주도자들(opinion leader)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정보 적극 제공
- (위기해결의 조언자) 전문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사항을 알려주고 제안할 수 있음
- ➔ 주요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해 향후 대책 마련과 메시지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 위기 발생 전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온라인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 이해관계자

- 대국민 소통과 별개로, 특히 피해가 심한 집단이나 위기 해결과 깊게 연관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충분한 소통 실시
  - \* (예) 감염병의 경우, △(특히 피해가 심한 집단) 취약계층·자영업자·소상공인, △(해결과 연관된 이해관계자)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 가능한 한 공식 브리핑에 앞서 피해자 협의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체에서 조율된 의견을 반영한 뒤 브리핑 진행
-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공감의 태도로,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며, 위기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위기 해결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전 설득 과정을 거쳐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 편견이 심하거나 반감이 있는 관계자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해야 함

## □ 영향력자(인플루언서)

- 유명 블로거, 유튜버 등 영향력자의 의견은 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음
- \* 초기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영향력자들에게 정확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면 위기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3. 소통 실행

#### 3-1. 공식정보 제공하기

##### □ 공식 브리핑 추진 [참고2]

- **(필요성)** 위기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메시지 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임
  - 위기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선 전달하고, 필요시 현장 책임자나 실무자의 추가 브리핑이나 인터뷰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 비공식적 경로로 상호 모순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함
- **(시점)** 초기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향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사건 개요와 수습 상황, 대책 마련 계획을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식 브리핑 실시
  - \* 첫 브리핑은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하고, 진행 중인 위기에 대해 사태의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
  - 온라인의 발달로 위기 발생 직후부터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브리핑 준비
- **(정례화)**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개최해 수습 진행 상황 등 진전된 내용을 원활하게 제공
  -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내보내는 정보에 대한 주목도가 큰 만큼, 일 1~2회, 정해진 시간에 브리핑 진행
  - 위기 상황 중 희생자가 발생하면 최고책임자(대통령, 총리, 장관 등)의 명의로 위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음

## □ 보도자료 배포

- (필요성)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문서의 형태로 상세하게 알릴 수 있음
- (방식) 각 기관별 누리집 개별 배포와 공식 누리집(후술) 공동 배포 모두 가능
- (기능) ▲현황 및 정부대책의 사전 안내, ▲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 ▲조치의 성과 등 위기와 관련된 부처의 최신 정보 전달

## □ 공식 누리집 마련

- (필요성) 공식 브리핑에서는 중요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면, 공식 누리집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정보를 축적함
- (방식) 특별 공식 누리집을 제작하거나, 기관 누리집을 공식적인 온라인 소통 창구로 일원화
- (기능) ▲현황, ▲사실 확인, ▲정부 대책, ▲부처 입장(반론·해명자료 포함),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신뢰할만한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

\* 중요 정보는 팝업, 배너, 별도코너 등을 활용해 찾기 쉽게 배치

-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사이트나 포털 등에는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모든 문의는 공식 창구로 유입되도록 안내

## □ 상담 접수창구 마련

- (필요성)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대처 방안을 문의할 수 있는 공식 상담 접수창구(콜센터 등) 마련
- (방식) 기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던 접수창구를 적극 활용하면서, 인력 확충 및 운영시간 확대

## 3-2. 언론 지원하기

언론과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는 위기관리 소통활동의 핵심!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 □ 개괄

- 최선의 위기관리를 위해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언론과 협력하는 업무를 강화해야 함
- 위기 보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 및 정책 등 자료 제공, ▲재난보도준칙 준수 및 협조요청, ▲공동 현장취재 추진,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재난주관 방송사 및 국가 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지원 등의 업무 추진

### □ 내부 지원체계 구축

- 언론의 취재나 인터뷰 요청은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에서 일괄 취합하여 정책부서에 전달
  -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은 인터뷰의 주제와 일정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무부서에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언론 대응 수칙과 요령을 사전에 숙지시킴
- 정책부서에서는 사전에 ▲기자 이름, ▲소속, ▲면담 주제 및 쟁점, ▲주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핵심 메시지, ▲예상질문과 답변, ▲관련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
- \* 인터뷰 요령은 브리핑 요령과 유사함. 전화 인터뷰는 녹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방송 인터뷰는 방송되는 시간을 고려해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하는 것이 좋음(길게 답변한 경우, 핵심 내용이 편집되어 전달되지 못할 수 있음)

## □ 국내 언론 지원

- (사전 공지) 기자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브리핑 등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함
  - 사전에 관계부처와 출입기자 명단을 구성하고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확보
- (현장 준비) 취재진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점검표를 작성하여 빠진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 (시설 설치) 다수의 기자가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본부, 현장 등)에 브리핑실과 취재지원센터 설치[참고3]
  - \* 기자(펜기자, 방송기자 구분)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브리핑실과 장비 등 지원 시설 점검
- (자료 공유) 브리핑과 관련된 자료는 기자들에게 배포·공유
  - \* (예) 대국민 메시지, 보도자료·배경자료, 성명서·설명자료·사과문 및 질답(Q&A), 통계자료, 재난보도준칙 등
- (요구 대응) 기자들의 문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서면 등 활용),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정보 수요 충족
  -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림·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
- (현장 관리) 취재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은 언론의 출입 가능구역과 제한구역을 구분하여 혼란 예방
  - \*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장소나 위험지역 등 출입제한구역에는 취재 제한선을 설치하고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해야 함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홍보담당자의 인솔하에 현장을 방문·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
  - \* 현장취재 기자들 중에는 취재기자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취재등록부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

## □ 해외 언론 지원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제협력의 기반이 되기도 하며,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주므로, 필요한 경우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외신의 취재활동 적극 지원
- \* 기자단 구성 시 외신기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신 취재지원 계획 마련
- 필요시 공식 브리핑을 번역하여 외국에 송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외신대상 공식 브리핑 마련

### 3-3. 가용매체 활용하기

각 부처에서 보유한 홍보수단(매체) 적극 활용

- 오프라인 매체
  - 옥외 전광판, 현수막, 실내 영상패널, 기관별 홍보물 등이 있으며 소통실의 '보유매체 협업' 기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 매체
  - 기관별/정책별 공식 누리집, 누리소통망, 온라인 기자단의 자체 채널 등이 있음

#### [참고] 온라인 소통 전략

- ① 메시지는 단일하게, 형식은 다양하게
  - 온라인 홍보도 전체적인 홍보 계획 속에서 한 목소리(One Voice)를 유지해야 함
  - 온라인 콘텐츠의 핵심은 형식의 다양화이므로, 브리핑 등 정부 공식 입장을 텍스트뿐 아니라 한컷뉴스, 동영상, 플래시, 만화,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② 경청하라
  - 10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9는 공감에, 1은 정보전달에 할애
  - 정부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진실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국민과의 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③ 맞춤형으로 하라
    - 주부, 학생,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홍보 대상을 세분화하고, 각 대상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대상별 맞춤 정보를 차별화하여 제공
  - ④ 맞서지 마라
    - 온라인 댓글 등이 부정확한 내용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내포하더라도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충분히 해명하는 등 추가적인 소통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음
  - ⑤ 담당자의 대처가 정부의 대처로 해석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 부처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 및 누리소통망(트위터, 페이스북 등) 등에서 가볍게 이야기(답변)하는 내용도 의도와 관계없이 정부의 공식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유의
- ※ 정부 가용매체가 아닌, 사적인 온라인 계정이라고 해도 담당자나 기관장 등 정부 관계자가 올린 글은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본질과 다른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기 쉬우므로 개인적 활동 또한 유의

### 3-4. 민간과 협업하기

-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쉽게 위기 관련 정보를 접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평소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서는 민간 유력 채널에서 유료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참고1

## 위기관리 소통 메시지 작성 시 고려사항

### □ 기본적인 고려사항

청자 [누구에게 하는가]	내용 [목적이 무엇인가]	매체 [어떻게 전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체/일부</li><li>○ 인구통계적 특성</li><li>○ 위기와 의 관련성</li><li>○ 피해의 정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진행상황/사실의 전달</li><li>○ 오보, 허위조작 정보 대응</li><li>○ 관계자/국민의 협조요청</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식 브리핑(TV, 현장 등)</li><li>○ TV, 라디오 등 방송</li><li>○ 신문 등 인쇄</li><li>○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li><li>○ 기타(전화 등)</li></ul>

### □ 메시지 구성 예시

1.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2. 사건개요 설명
  - (6하원칙)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3.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
4. 원상회복 노력 천명

### 1. 발표자(briefer)의 지정

- 공식 브리핑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로 지정함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현재 상황, 정부 조치, 향후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표함
  - 핵심 메시지 발표자가 질의응답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업무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배석시켜 질의응답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발표자의 직함은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변인’ 보다는 직무형 직함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메시지의 중요성에 따라 발표자를 구분할 수 있음(예: 대통령, 총리 등)

### 2. 브리핑 준비

- 위기 상황에서 대국민 발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핵심 메시지, ▲발표 내용, ▲발표 자세, ▲예상 질답, ▲참고자료(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와 용어, 위로나 유감 표현) 등을 준비
  - 브리핑은 ‘읽기’가 아니라 ‘말하기’임을 숙지하고, 사전 예행연습
  - 한 문장은 12~14개 단어로 구성하고, ‘첫째’, ‘둘째’ 등 발표문을 구조화 하며, 종결어미를 자주 사용해 문장을 간결화
- 복장은 비상근무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한 화장이나 장신구 등은 피해야 함



### 3. 발표자의 자세

- (기본 자세) 여론은 유동적이므로, 진실한 자세로 일관되게 설득하면 변할 수 있다는 점 명심
  -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에 대해 쉽게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 정부가 사태수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강조해 문제해결 의지가 있음을 각인
  - \* 제대로 된 정보의 전달이나 대책 없이 정부 성과만을 나열하는 자화자찬식 발표는 지양
  - 언론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대해야 함
  -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함
  - 언론의 비판은 당연한 것으로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됨
  - 언론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언론을 공평하게 대해야 함
- (감정의 통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로 발표
  -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며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 유지
  - \* 변명이나 핑계로 해석될 만한 발언은 지양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송구함 표시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
  - \* **[!]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실수는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 협력의 동력을 저해함**
- (실수 최소화) 모두가 예민한 상황인 만큼, 공식 석상에서 품행, 표정에 유의하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 등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

#### 4. 브리핑 시 유의사항

- (정확성) 확인되지 않은 자료, 확정되지 않거나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은 발표해서는 안 됨
  - 브리핑 등 대국민·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에 대한 최신 통계와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함
  - \* **[!]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 상실**
  - 주관적 감정이나 선부른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와 사실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지 않음
- (투명성) 위기 관련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고,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알려 공감을 얻어야 함
  - 부정적 사안이라도 알려져야 할 사실이라면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전후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
  - \* **[!] 문제가 있을수록 미리 알리고 대응해야 함(사후 해명은 공신력에 상처를 줄 수 있음)**
- (적극성) 언론에 보도되어 이슈화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자가 묻기 전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 제공
  - 언론 오보나 온라인상의 각종 유언비어, 비판, 거짓 정보 등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하는 노력 지속
  - \*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짐**
- (일관성) 정부의 발표나 입장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책이나 입장이 변경되면 합리적으로 설명·설득해야 함
  - (기관 간 일관성)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은 반드시 조율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함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삼가야 함

- (내용의 일관성) 한 번 발표된 내용은 그대로 지켜져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발표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 \* **[!]** 말바꾸기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 (신중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정리된 자료를 기초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
  - 위기의 원인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언급 시 신중을 기하고, 특정 집단의 반발을 야기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함
    - 특히, 사고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및 자극적인 표현은 피해야 함
  - 사전에 피해자 및 가해자 등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결정
- (용이성)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
  - 업계에서 통용되는 전문용어나 약어, 영어 등 외국어의 사용을 삼가고, 언론이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발표

## 5. 상황별 질의응답 요령

-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
  - 발표자가 대답할 수 없는 전문적·실무적인 내용은 선불리 답변하지 말고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
    -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예단,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음
    - 통계수치의 정확성을 100% 장담할 수 없을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표현 사용

-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여 답변을 요구했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취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등으로 답변

□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질문한 경우

- 비보도요청(Off The Record)이나 단순 답변거부(No Comment)는 지양하고, 답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

- \* (예) “상황이 정리되면 추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해관계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비보도요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라도 무시될 수 있음
- 답변거부는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부정적 암시를 줌

-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이나 어투, 논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을 배제한 채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응답

- \* (예) “말씀하신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방대한 범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의 경우

- 답변은 결론부터, 간결하고 명확하게 발언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한번 더 되풀이
- 여러 질문을 동시에 받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답변이 가장 쉽거나 간단한 질문에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는 질문을 다시 확인

□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질문할 경우

- 잘못된 사실이나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해당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내용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

- \* (예)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경우

- “이번 상황이 ‘예’나 ‘아니오’(혹은 ‘A냐 B냐’)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제한 후 이에 대해 성실하게 충분히 설명

□ 단언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 확인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임을 언급한 뒤 위기관리 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 강조

\* (예)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 참고3

##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를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 결정

#### □ 장소 선정

-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며, 현장 대책 본부의 활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취재진의 규모를 고려해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 \* 취재지원실은 일반적으로 50명 이상 수용,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고 취재 편의를 위한 휴식 공간을 구비하는 것이 적합하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 설치 시점 :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에 설치

#### □ 기능

- ① 수시 상황 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② 언론 상황 파악 및 대응
- ③ 현장 취재단 지원
  - 취재 송고시설 마련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요청

#### □ 역할분담

- (언론지원) ① 취재등록부 관리 등 언론 연락체계 유지, ② 보도자료 배포(이메일, 문자 등), ③ 언론 요구사항 파악 및 대응(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현장안내 등)
- (센터관리) ① 현장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 시설 설치\*, ② 현장 취재제한선 설치 요청, ③ 공동 현장취재 관련 편의 제공(이동용 차량 준비 등)

\* 현장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장소나 시설 활용

(물품 예시) 마이크, 배경막(기관 로고 확인), 책상·의자,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 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전달 체계

### □ 구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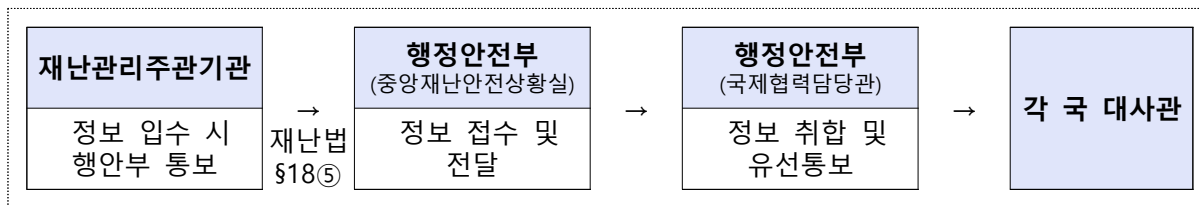
-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신변 보호 및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 국적 사상자 인적정보를 각국 대사관에 통보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영사관할구역내의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 (내용)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 등

### □ 전달 체계



- (외교부) 주한 공관 비상연락망 정보 제공 \* 반기별 업데이트 실시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국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 국적 사상자 존재하는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해당 피해자 인적정보 전달
  - (국제협력담당관실) 대형재난으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해당 외국인 국적 주한 공관에 피해 현황 통보
    - 재난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피해상황, 사상자 인적사항 등을 FAX 및 이메일로 유선 통보
- \* 경찰·해양경찰 : 대사관에 사망자 정보 통보

#### 【 수습사례 】

- ▶ '18.2.28. 어선 전복사고로 외국 국적 사망자(선원) 인적정보 제공, 영사관 통보
- 해당 외국 국적 대사관(부산출장소)에서 시신인계(3.2), 항공편으로 본국 인도(3.4)

〈Notification on Foreign Casualties of Accident/Disaster〉

We would like to notify your Embassy that foreign casualties of [ ] nationality occurred due to [ ] as below.

**[ Personal Information of Casualties ]**

- o Name:
- o Gender :
- o Age:
- o Nationality:
- o Degree of injury:

**[Type of Accident]**

- [ ] Industrial accident    [ ] Fire    [ ] Traffic accident    [ ] Drowning accident    [ ] Vessel accident    [ ] Others

**[Details of Accident]**

- o Date/Time : Feb. 23, 2021 (Tues) 09:00 (accident reported)
- o Place : oo facility, oo daero 410, oo-si/gun
- o Details: oo workers fell during oo work.  
The fire brigade arrived at the site and transferred the injured to a hospital after the rescue is completed.  
  
Death 0, severe injury 0, minor injury 0

**[Note]**

※ We have informed you of the accident occurred on February 23 as abov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oo Fire Station or oo Police Station (T: 044-300-000).



## 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가. 중앙부처

기 관	부 서	연 락 처
국 가 안 보 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5(전) 02-770-4887(팩)
여 성 가 족 부	가족정책과	02-2100-6330(전) 02-2100-6485(팩)
외 교 부	종합상황실	02-2100-7000/7100(전) 02-2100-7998(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비상안전담당관	043-719-1642~6(전) 043-719-1640(팩)
국 가 보 훈 처	운영지원과	044-202-5341~3(전) 044-202-5398(팩)
법 무 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2-2110-3012(전) 02-2110-0315(팩)
법 제 처	운영지원과	02-2100-2519(전) 02-2100-2781(팩)
국 가 정 보 원	상황실	02-3414-9437(전) 02-2187-0311(팩)
국 무 총 리 실 (국 무 조 정 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044-200-2240(전) 044-200-2247(팩)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8, 2351(전) 044-200-2367(팩)
	민정민원비서관실	044-200-2810(전) 044-200-2825(팩)
기 획 재 정 부	비상안전기획과	044-215-2680~5(전) 044-215-8035(팩)
	농림해양예산과	044-215-7351~6(전) 044-215-8051(팩)
행 정 안 전 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대응정책과	044-205-1540~5(전) 044-205-8890(팩) 044-205-5217(전) 044-205-8954(팩)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2-2110-2165(전) 02-2110-0278(팩)
교 육 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893(전) 044-203-6971(팩)
국 방 부	합참지휘통제실 재난관리지원과 재난상황실(합참) 육군 지휘통제실 해군 지휘통제실 공군 지휘통제실	02-748-0301~0304 02-748-5763 02-748-3183~4, 5790~4 042-551-0535, 0301 042-553-0330 042-552-6644~5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운영지원과(주간) 당직실(야간, 공휴일)	044-201-1255(전) 044-868-0136(팩) 044-201-1000(전) 044-868-0140(팩)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종합상황실(주·야)	044-203-4002~5(전)

기 관	부 서	연 락 처
보 건 복 지 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2-2390(전) 044-202-3922(팩)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0(전) 044-202-3958(팩)
	응급의료과	044-202-2550(전) 044-202-3930(팩)
	야) 당직실	044-202-2117(전) 044-202-3985(팩)
소 방 청	119종합상황실	044-205-6119(전) 044-205-8860(팩)
해 양 경 찰 청	수색구조과	032-835-2245(전) 032-835-2973(팩)
	기동방제과	032-835-2294(전) 032-835-2994(팩)
	해양안전과	032-835-2239(전) 032-835-2991(팩)
	종합상황실	032-835-2157(전) 032-858-8182(팩)
환 경 부	상황실(서울스퀘어)	02-6456-8677(전) 02-6456-8692(팩)
	화학안전기획단/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0(전) 044-201-6786(전)
	폐자원관리과	044-201-7360(전) 044-201-7376(팩)
고 용 노 동 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5(전) 044-202-8094(팩)
해 양 수 산 부	종합상황실	044-200-5895~8(전) 044-200-5886(팩)
	당직실(야간)	044-200-5990~1(전)
	해양영토과	044-200-5992(팩) 044-200-5357(전)
	비상안전담당관	044-200-5259(팩) 044-200-5190(전) 044-200-5199(팩)
경 찰 청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계)	02-3150-2362(전) 02-3150-3657(팩)
	위기관리센터 (치안상황실)	02-3150-1234(전) 02-3150-3657(팩)
기 상 청	해양기상과	02-2181-0750(전) 02-841-7045(팩)
	국가기상센터	02-2181-0672~5(전)
	예보정책과	02-836-6755(팩) 02-2181-0502(전) 02-847-4419(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팀	044-200-6114(전) 044-200-6122(전) 044-200-6139(팩)

## 나. 지방자치단체

기 관	부 서	연 락 처
서울	서울종합방재센터	02-726-2071~4(전) 02-726-2044(팩)
부산	재난대응과	051-888-2953(전) 051-888-2959(팩)
	소방안전본부(종합상황실)	051-760-3155(전) 051-760-3159(팩)
대구	방재대책과	053-803-4556(전) 053-803-2649(팩)
	소방안전본부(종합상황실)	053-350-4000(전) 053-350-4069(팩)
인천	소방안전본부(현장대응과)	032-870-3090(전) 032-440-8753(팩)
	119 종합방재센터	032-870-3310(전) 032-870-3189(팩)
광주	재해예방과	062-613-4921(전) 062-613-4919(팩)
	119종합상황실	062-613-8089(전) 062-613-8098~9(팩)
대전	안전총괄과	042-270-4950(전) 042-270-4939(팩)
	119종합상황실	042-270-6181(전) 042-270-6179(팩)
울산	재난관리과	052-229-4150(전) 052-229-2679(팩)
	119종합상황실	052-229-4620~1(전) 052-229-4519(팩)
세종	치수방재과	044-300-5311~7(전) 044-300-5319(팩)
	119종합상황실	044-300-3119(전) 044-863-0119(팩)
경기	자연재난과	031-231-0340(전) 031-230-2925(팩)
	재난종합지휘센터	031-230-6623(전) 031-230-2969(팩)

기 관	부 서	연 락 처
강원	안전총괄과	033-249-3831(전) 033-249-4055(팩)
	119종합상황실	033-249-5114(전) 033-249-4065(팩)
충북	치수방재과	043-220-4112(전) 043-220-4119(팩)
	119종합상황실	043-220-4944(전) 043-220-4949(팩)
충남	재난대응과	041-635-3272(전) 041-635-7957(팩)
	119종합상황실	041-635-3119(전) 041-635-3080(팩)
전북	안전정책관	063-280-2378(전) 063-280-3829(팩)
	119종합상황실	063-280-3119(전) 063-280-3879(팩)
전남	안전정책과	061-286-3220(전) 061-286-4792(팩)
	119종합상황실	061-286-0901(전) 061-286-0910(팩)
경북	자연재난과	054-880-2352(전) 054-880-2369(팩)
	119종합상황실	053-715-2119(전) 053-715-2119(팩)
경남	안전총괄과	055-211-4521(전) 055-211-4519(팩)
	119종합상황실	055-211-5522~4(전) 055-211-5339(팩)
제주	재난대응과	064-710-3942(전) 064-710-3949(팩)
	119종합상황실	064-710-2117(전) 064-710-4119(팩)

## 7. 국민행동요령(안전취약계층 포함)

### 평상시에는

- 조수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백중사리시나 해상날씨 악화시 TV나 라디오 등 재난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한 지역의 접근을 삼갑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합니다.
- 침수, 범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 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 해안가, 해안도로 등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시다.



### 조수로 인한 침수, 범람 등 비상상황시에는

- 조수로 인한 침수, 범람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재난방송이나 지자체 공무원 또는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본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분한 가운데 질서있게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 시는 질서를 지키고 침착하게 서로 협력하여 대피하도록 하고 가급적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못 움직이지는 사람 등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대피시키도록 합니다.
- 어린이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동행 해야 하며,

보호자는 어린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주의사항과 비상 시 대처 방법을 직접 알려주어야 합니다.

- 부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 조수로 인한 침수, 범람 시 저지대 인근 거주자들은 고층건물, 고지대 등의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특히, 고조, 너울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해안 가까이로의 접근을 금하며,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너울, 이안류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방파제, 갯바위, 호안 등 위험 지역의 접근을 금하며, 해수욕장에서는 입욕을 중지하고 입욕통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상황 발생시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직접 얻은 정보를 신뢰하고 근거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믿고 선불리 행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침수범람 발생시에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 운전 중일 경우 감속운행 합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시다.
- 취약하거나 위험장소에 갇혔을 때는 119(재난신고)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 참고. 재난현장 대피시 안전취약 계층 특성별 대피 고려사항

- 주관부서 : 비상대책반 총괄통제부, 비상대책반 지원부
- 지원부서 : 비상대책반 운영대책부, 비상대책반 복구대책부
- 협업기관 : 여수·광양경찰서, 여수·광양시 등 지자체

### 1. 안전취약계층 유형별 특징

#### ○ 시각장애인

- 자신의 힘만으로 피해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시각정보에 의한 긴급사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숙한 지역 내에 있더라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도움 없이는 평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의 행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혼자서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없다).
-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 ○ 청각장애인

- 음성정보를 전달받기 어렵거나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시각 정보가 아닌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음성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걸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지체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 ○ 시청각중복장애인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이 어렵다(단독 대피가 어렵다).

- 장애의 상태(전맹전농, 약시전농, 전맹난청, 약시난청)별로 정보 수집 방법이 다르며, 상황판단이 어렵다.

○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걸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지체장애인

-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 특히, 하지장애인 등은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이 어렵다.

○ 내부장애인

- 걸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자력 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심장·신장·호흡기 등 기능장애로 인해 인공투석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항상 의약품을 소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 항상 의료기기(인공호흡기, 산소봄베, 가래흡입기 등)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 지적장애인

-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변화에 크게 동요하는 경우가 있다.

○ 정신장애인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둘 이상의 지시를 받으면 혼란하는 경우나, 음성으로 받은 지시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 방금 전의 기억 또는 목적지나 장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궁금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환경 변화에 따른 동요를 보이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우나, 매번 지시받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경우나, 직접 지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걸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다”, “알았다” 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할 수 없다.
- 갑자기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자신의 피로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 발달장애인

- 환경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투르므로, 불안한 상태에서 침착성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패닉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다.
- 의사소통이 서투르므로, 정보를 한꺼번에 받으면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나 자신의 어려움을 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 상상하는 것이 서투르므로, 대피의 필요성이나 위험한 장소 또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청각·촉각 등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특정 소리를 싫어하여 귀를 막고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 편식하거나 특성 옷만 입거나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감각이 둔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상태 불량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질병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 치매노인

- 시간·장소·사람을 파악하는 데 혼란하는 경우가 있다.
- 식사했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음식을 요구하는 등 최근에 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주변에 있는 물건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 옷을 잘 갈아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상기 증상은 환경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쉽다)

○ 임신부

-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으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 2.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배려 사항

### ○ 시각장애인

- 시각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불가능하거나 한순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음성에 의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중복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다.

### ○ 청각장애인

- 음성에 의한 대피명령 및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수화·요약필기·문자·그림 등을 활용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 시청각중복장애인

- 시각 또는 음성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어려우므로, 점화(點話, finger braille), 촉수화(觸手話, tactile signing), 지문자(指文字, fingerspelling), 손바닥에 글씨 쓰기(print-on-palm), 확대문자(large print) 등 개인별 장애상황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 정보전달·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혼자 있으면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 것을 고려한다.

### ○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화·필담 등을 활용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 ○ 지체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이 경우, 유지관리도구(공기주입, 펄크수리, 공구)도 필요하다.

#### ○ 내부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휴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배설기구 장착자인 경우에는 인공배설기구용 기구가 필요하다.

#### ○ 지적장애인

- 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면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정신장애인

- 재난 발생 시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평소부터 스스로 약의 종류를 파악하도록 지도하며, 의료기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 고차뇌기능장애인

- 기억장애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본인의 증상을 파악하여 행동요령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발생할 일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는 등 본인의 증상에 맞는 유도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긴급사태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난 발생 시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 음식·물자 배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거나 소란피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 대신에 줄을 서주거나 별도배급 등의 대응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발달장애인

- 앞으로 일어날 일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일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전달한다. 귀로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을 잘 이해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실물·사진·그림이나 단어 등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패닉 등을 일으킨 때에는, 기분이 진정

되도록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거나 개인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텐트나 파티션·골판지로 주위의 공간과 구별하는 등의 고안이 필요하다. 청각과민인 경우에는 헤드폰 또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준비하는 등을 통해 진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부상 또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없어도, 몸 상태를 대강 확인하거나 식사·수면 중인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지체장애가 있거나 외견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병태나 증상에 따른 대피유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호흡기나 인공투석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만성질환자가 많고, 의약품을 확보하는 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 치매노인

- 긴급사태 등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3.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정보전달 시의 주요 배려 사항

#### ○ 시각장애인

- 시·군·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알기 쉬운 어조로 전달한다.
- 음성 정보로 여러 번 반복한다.

- 점자나 확대문자 외에, 점화나 축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 둘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 의사소통을 취하여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 청각장애인

-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말한다.
- 문자나 그림을 조합한 필담으로 정보를 전달한다(항상 필기구를 준비해둔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 수화통역자 및 요약필기자를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게시판·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소에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 시청각중복장애인

- 생활환경이나 장애상황, 장애발생 시기 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
- 의사소통 방법은 점자(점화), 수화(축수화), 지문자, 필담, 손바닥에 글씨 쓰기, 음성 등이며 둘 이상의 조합으로 의사소통한다.
- 시·군·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점화나 축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전달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지적장애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한다.
-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한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행동요령, 중요한 설명·예정은 메모로 전달한다.
-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말을 할 수 없어 곤란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추측하여 선택지를 주거나 그림·지도를 활용하는 등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하여, 초조해하는 때에는 조용한 장소로 유도하여 침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메모를 붙여놓거나, 반복하여 설명한다.

○ 발달장애인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에 따라 실물이나 사진, 그림, 단어 등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한다.
- 미리 알릴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사전에 전달한다.
- 큰 목소리를 무서워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말을 걸어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만지면 안 되는 것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것을 확실히 전달한다. 「×」 등의 표지나 마크를 사용하여,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치매노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천천히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대피유도 시 주요 고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안부확인파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할 지를 사전에 결정해둔다.
- 시각장애이용 지팡이를 확보한다.
- 일상생활권 내에서도 재난 시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지 지도(認知地圖)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배려한다.

○ 청각장애인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안부확인파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어떻게 할지 사전에 본인에게 전달하여 결정해둔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 약간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지원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외톨이가 되었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언어장애자(실어증 등)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 지체장애인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 내부장애인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한다.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 지적장애인

- 혼자 있을 때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호한다.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신장애인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내어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고차뇌기능장애인

- 피해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 행동요령이나 중요한 설명·예정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더라도, 반복하여 설명한다.
- 길이나 건물 안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지까지 동반하는 등 필요한 유도를 행한다.
- 부상을 입었으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주된 증상 뿐만 아니라, 신체상황 등 주변에서 청취하는 등 잘 확인한다.

### ○ 발달장애인

- 사전에 대피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행선지, 이동 소요시간, 동행하는 사람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앞으로 일어날 일(할 일, 갈 곳 등)이나 행동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말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대화한다.

###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킨다.

○ 치매노인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유의하며 지원한다.

○ 임산부

- 행동 능력은 떨어지나,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
- 대피 중의 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피유도가 필요하다.
- (대피소에서의 유의점)
  - 의료보험 서비스의 제공이나 심리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
  - 충분한 영양(영양식품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거실의 온도를 조정(신체를 차갑게 하지 않도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8.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관측소별 고조정보(4단계)

※ 고조정보 기준 높이(4단계) 기준일 : 2021.11.15, (단위 : DL+ cm)

조위관측소		고조정보(4단계) 기준 높이								비고 (관련 지자체)
		당 초				변 경				
		관심	주의	경계	위험	관심	주의	경계	위험	
1	인천	886	906	953	1,000	886	906	953	1,000	인천/김포/시흥
2	안산	866	886	921	956	866	886	921	956	안산/화성
3	평택	931	951	986	1,021	931	951	986	1,021	평택/아산
4	대산	828	848	883	918	828	848	883	918	당진/서산
5	안흥	690	710	752	795	690	710	752	795	태안
6	보령	764	784	819	854	764	784	819	854	홍성/보령
7	어청도	606	626	650	675	606	626	650	675	어청도
8	장항	725	745	791	838	719	739	788	838	서천
9	군산	710	730	765	800	693	713	756	800	군산/김제/부안
10	위도	663	683	713	743	663	683	713	743	위도
11	영광	670	690	731	773	670	690	731	773	고창/영광/함평
12	목포	486	506	528	550	486	506	528	550	무안/목포/신안/영암
13	흑산도	371	391	405	420	371	391	405	420	흑산도/홍도
14	진도	380	400	425	450	378	398	424	450	진도
15	완도	401	421	445	470	401	421	445	470	해안/완도/강진/장흥
16	거문도	340	360	395	430	340	360	395	430	거문도
17	고흥발포	376	396	425	455	376	396	425	455	보성/고흥/순천
18	여수	362	382	411	440	362	382	411	440	여수/광양/하동/남해
19	통영	280	300	322	345	280	300	322	345	사천/고성/통영
20	거제도	221	241	265	290	221	241	265	290	거제
21	마산	162	182	218	255	162	182	228	280	창원
22	부산	150	170	207	245	150	170	207	245	부산
23	제주	278	298	329	360	278	298	329	360	제주북부
24	서귀포	303	323	354	385	301	321	353	385	제주남부
25	성산포	223	243	281	320	223	243	281	320	제주동부
26	모슬포	294	314	329	345	294	314	329	345	제주서부
27	추자도	336	356	367	378	336	356	367	378	추자도
28	울산	81	101	148	195	81	101	148	195	울산
29	포항	45	65	115	165	45	65	115	165	경주/포항
30	후포	47	67	103	140	47	67	103	140	영덕/울진
31	묵호	58	78	116	155	58	78	116	155	삼척/동해/강릉
32	속초	59	79	107	135	59	79	107	135	양양/속초/고성
33	울릉도	52	72	118	165	52	72	118	165	울릉도/독도

## 9. 국립해양조사원 이안류 정보(4단계)

단계	위험지수	해수욕 가능 여부
관심	$S < 30$	이안류 발생이 희박한 상황
주의	$30 \leq S < 55$	이안류 발생이 가능한 상황
경계	$55 \leq S < 80$	강하고 돌발적인 이안류 발생이 농후한 상황
위험	$80 \leq S$	매우 위험한 이안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황



단계	위험지수	해수욕 가능 여부
관심 (희박)	$S < 30$	이안류 발생이 희박한 상황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일상 해수욕 가능
주의 (가능)	$30 \leq S < 55$	이안류 발생이 가능한 상황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수영이 능숙한 사람만 해수욕 가능
경계 (농후)	$55 \leq S < 80$	강하고 돌발적인 이안류 발생이 농후한 상황으로 수영이 능숙한 사람도 가능한 해수욕 지체
위험 (대체)	$80 \leq S$	매우 위험한 이안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해수욕 불가(해수욕객 대피)

1 실시간 부어 조위 관측값을 기반으로 이안류 발생 가능성 지수 및 경보단계 표시	5 이안류 위험지수(S)의 실시간 시계열 모니터링 이안류 지수가 단계에 도달하는지 감시
2 이안류 발생 경보단계 기준	6 해운대 설치된 CCTV4개의 실시간 영상화면
3 누리마루 부어 유속, 미포항 부어 유속, 부산 조위 관측값 표시	7 해운대 설치 3개 부어의 실시간 유량, 유속, 파고, 기상 및 부산 조위관측소의 조위, 수온 및 조위예보자료 제공
4 해운대 부어의 유의파고와 유의파주기 값 표시 파고 높기와 주기가 커지는지 감시	8 해운대 CCTV4개 및 부어3개 배치도

소관 부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연락처

전화) 061-797-4480

팩스) 061-797-4494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